

“일제피해자 도울 공익재단 조속히 설립하라”

한·일 변협이 재단설립 돕고 한국정부·기업, 일본정부·기업이 나서야 변협, 성명서 내고 한국사법부 판단 존중하라며 징용피해 배상 강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신영무)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전범 기업들은 한국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여 일제피해자 문제에 적극 나서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진병 대변인의 사회로 진행됐고 김중철 변협 인권이사가 성명서를 낭독했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제동원 가해 기업들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함과 동시에 이번 판결을 계기로 관련 일본 기업들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며 “일본 정부와 가해 기업은 이번 대법원 판결과 한·일 변호사협회의 권고에 근거, 독일의 예에 따라 재단을 설립해 피해자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2000년 7월 ‘기억, 책임 및 미래재단’ 설립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와 기업이 7조8000억원을 모아 재단을 설립하는 등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치정권에 의한 강제노동 피해자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을 적시했다.

변협은 또 “포스코와 같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수혜기업도 최근 일제 징용피해자들을 위해 기금기탁의사를 밝히는 등 피해회복 의지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



일제피해자 유족 이윤재 대표가 정부의 조속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구제에 관한 법적, 제도적 지원이 소극적이어서 피해자들의 원성이 높았다”며 정부가 외교적 역량을

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재단으로 피해자에 배상해야 양국 변협이 법적 뒷받침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최봉태 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맡았다.

왜 재단 설립을 통해 일제피해자 배상이 이뤄져야 하는지를 묻자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일제피해자에 대해 배상책임이 인정된 일본 기업에 대해 개별적으로 소송이 잇따르면 일본기업의 영업이 사실상 힘들다”며 “일제피해

자의 입장에서도 개별 소송에 나서면 브로커들이 난립하기 쉽고 배상까지의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현재 재단설립의 근거법이 만들어져 있고 대한변협과 일본변호사연합회가 손잡고 재단설립을 도우면 일제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진행하기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포스코는 100억원 회사 용의를 밝혔으나 재단이 설립되지 않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전쟁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들이 실제 소송을 당해 한국에 있는 자산에 대한 집행에 들어가면 영업을 불가능해져 오히려 일본 기업을 돕는 일이라는 점도 설명했다.

대한변협과 일변연이라는 법률가단체가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미쓰비시 등 일본기업도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낼 것이라고
▶3면으로 이어짐

연수원 41기 등 신규변호사 선서식

의무연수제도 변경 등 설명

대한변협은 지난 18일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연수원 41기 졸업생 등 2012년 신규변호사 선서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서식에서는 서울회 소속 이상현 변호사와 경기중앙회 소속 차명심 변호사가 대표로 변호사선서문을 낭독하고 신영무 협회장으로 부터 변호사 배지를 수여받는

시간을 가졌다.

신영무 협회장은 축사에서 “젊고 우수한 인재인 여러분은 못해낼 일이 없다”고 격려하며 새로운 영역을 직접 개척하는 도전정신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또 “변호사로서 여러분이 받게 될 평가의 기준은 사법시험이나 연수원의 그것과는 조금 다르다”며 “무엇보다 성실함으로 상대방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어영강 교육이사의 변호사 의무연수 제도 설명이 있었다. 기존 의무연수제도는 2년간 전문연수 14시간과 윤리연수 2시간을 이

수토록 했으나, 2012년 2월 20일 이후에 개업한 회원들부터는 이에 더해 현장연수 2시간과 개별연수 6시간을 추가 이수해야 한다.

제43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후보 추천 공고

한국법률문화상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매년 법조실무나 법률학 연구를 통하여 인권옹호, 법률문화의 향상 또는 법률문화교류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조인 또는 법학자에 대하여 그 업적을 치하하고 공로를 현양하기 위하여 1969년에 제정한 상으로, 올해로 43회를 맞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인권 옹호와 법률문화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후보를 엄선하여 오는 8월 20일(월)에 개최되는 제43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식에서 수여할 예정이니, 본 상의 취지에 맞는 훌륭한 수상후보를 많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대상 : 법조인

법조단체 및 관련 회의 장
법학전문대학원 및 대학의 장
기타 한국법률문화상운영위원장이 인정한 단체의 장

■ 추천마감 : 2012년 7월 6일(금) 18:00 까지

■ 포상내용 : 상패 및 상금 2000만 원

■ 제출서류 : 추천서 등

(소정의 양식은 협회 홈페이지 www.koreanbar.or.kr에서 다운로드)

■ 접수처 :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률문화상운영위원회

(담당 변혜연 대리, ☎ 02-2087-7711)

※ 유의사항

추천인은 1명의 후보를 추천해야 하며, 자기 자신을 추천할 수 없음

변협, 외국법자문사 1호 변호사에 등록증서 수여



대한변협은 지난 18일 외국법자문사 1호로 등록한 룩스 앤 그레이의 김용균 변호사에게 등록증서와 기념품을 증정했다.

김 변호사는 “국내 외국법자문사 1호로 등록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며 “나와 포럼 모두에게 큰 영광인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룩스 앤 그레이 분사무소 개소를 통해 한국기업에 미국법과 관련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길 기대하고 있다”며 “대한변협의 여러 위원회에도 참여해 대한변협과 한국변호사들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해외 시장으로 뻗어 나가기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장규 하이트진로 고문 초청 포럼



대한변협은 오는 28일 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이장규 하이트진로그룹 고문을 초청, 제21회 변협 포럼을 개최한다.

‘대통령의 경제학’을 주제로 한 이날 포럼에서 이장규 고문은 이승만 정권에서부터 노무현 정권에 이르는 동안 한국 경제 발전과 리더십의 관계에 대해 강연하고, 우리에게 어떤 대통령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 고문은 중앙일보 경제부장 겸 편집국장을 지냈으며 현재 서강대 경제대학원 초빙교수로 재임 중이다.

이번 제21회 변협 포럼에 참석하고자 하는 회원은 협회 홍보과(담당자 봉옥 02-2087-7754, youmiri@koreanbar.or.kr)로 신청하면 된다.

다음 제22회 변협 포럼은 7월 19일 열리며, 신정근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교수가 강사로 나서 ‘장자-거꾸로 사는 삶에서 놓여 나기’를 주제로 강연한다.

통일법제사이버아카데미 봄학기 종강식 개최



남북한 통일 이후 법제통합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북한 지

역에 파견할 법조인력을 양성하고자 마련된 통일법제사이버아카데미가 약 4개월간의 봄학기를 마치고 지난 20일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게 종강식을 개최했다.

봄학기는 북한의 이해 및 남북한 관계 일반론 12과목으로 구성됐다.

종강식에서는 통일교육위원 중앙협의회 정종욱 의장이 강사로 나서 ‘남북통일을 위한 외교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디도스 특검, 최종 수사결과 발표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사건을 수사해온 디도스 특별검사팀(박태석 특별검사)이 21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박태석 특별검사팀은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 행정관 김모씨,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 수행비서 김모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LG유플러스

차장 김모씨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사무원 고모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원선이 개입해 디도스 공격을 주도하고, 디도스 수사를 경찰과 검찰이 조직적으로 축소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특검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정치인 등을 소환조사하는 등 성역 없이 수사했다”고 밝혔다.

변호사 25時
-243-
〈변호사의 프라이드〉
변호사 이영욱

당신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당신이 아무리 유명하고 잘났어도

당신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학식이 높아도

나한테 사건 안맡기면 남이지 뭐~

차별화된 광고!
여기, 「대한변협신문」이 있습니다.
광고문의
2087-7754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 시행 안내

대한변협신문은 국제화·전문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변호사들 간 자유경쟁을 통해 전문성을 극대화 하며 법률수요자의 요구에 적합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0년 1월부터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으니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문분야를 등록하고자 하는 회원께서는 대한변협신문 전문분야등록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신청서(협회 홈페이지 내려받기 가능)를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시거나 법제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내용은 본 협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 처리 과정
- ① 신청 접수(우편·방문)
- ② 전문분야등록심사위원회 각 분야별 위원 검토
- ③ 심사결과 상임이사회 상정 및 의결
- ④ 신청자 결과 통지(등록증 교부·대한변협신문 공시)

◆ 신청 분야(최대 2개 등록 가능)
- 협회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참조

◆ 등록 유효기간: 5년

◆ 등록 신청비: 1개 분야당 100,000원
※ 협회(계좌번호: 신한은행 140-000-353899, 예금주: 대한변협신문)로 등록신청비를 송금하시는 경우, 입금여부를 협회로 연락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8-1 변호사회관 5층
대한변협신문 전문분야등록심사위원회
우편번호: 137-885

◆ 연락처
- 전화 02)2087-7721, 팩스 02)3476-4008
- 이메일 jdchang78@koreanbar.or.kr
- 담당자: 주임 양희창(법제과)

통일법제사이버아카데미

여름특별반 · 가을학기 수강생 모집

봄학기 수료자 백두산 韓中 접경지 수학여행



17일에 있었던 '북한의 경제특구법 개정이 대외 경제협력에 주는 시사점과 남북경협 의 과제' 간담회

통일법제사이버아카데미가 봄학기 마지막 코스로 수학여행을 떠났다. 수학여행 참가자들은 6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백두산 및 조중접경지역을 방문하고, 학술회의 및 간담회에도 참석했다.

15일에는 '동북아 국제관계와 협력의 정치경제' '북·중 경제협력의 실상과 남북경협의 대응과제' '북·중 지역 경제 인프라 개발의 의미와 파급효과' 등을 주제로 발표·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학술회의 마지막 시간에는

'북·중 경제특구법 제정의 법적 조망'을 놓고 참가자 전원이 토론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어 17일에는 '북한의 경제특구법 개정이 대외 경제협력에 주는 시사점과 남북경협의 과제'를 주제로 한 경험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했으며, 18일에는 '라진·선봉 지역 개발에 따른 북한의 변화 동향과 대북 교류협력 사업 사례'를 주제로 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한편 통일법제사이버아카데미는 7월 9일까지 봄학기 여름특별

반과 가을학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봄학기 여름특별반은 봄학기(3월 12일~6월 25일) 강좌를 7월과 8월 두달 동안 수강하는 형태이며 전체 강의 수강 시 정규반과 같은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가을학기 강좌는 '남북 교류·협력 및 통일 법제 연구'를 주제로 한 12개의 강좌(하단 표 참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9월 3일부터 시작된다.

변호사 회원의 경우 온라인번호사연수원(e.koreanbar.or.kr)에 접속해 로그인(대한변협 홈페이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가능)한 후, 통일법제 사이버 아카데미에 접속해 학기별로 장바구니에 담고 카드나 휴대전화로 결제하면 해당 강좌의 수강이 가능하다.

원하는 과목만 따로 수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한번 수강한 강의는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다. 일반회원의 경우 먼저 회원가입을 한 후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수강신청을 하면 된다. 수강료는 학기당 24만원이며, 로스쿨생이나 대학원생은 12만원에 수강할 수 있다(부가세 미포함).

봄학기(3월 12일~6월 25일)를 수료한 수강생에게는 수료증이 수여되고, 가을학기(9월 3일~11월 26일)까지 모두 수강한 수강생에게는 졸업장이 수여된다. 또한 변호사의 경우 학기당 의무연수 3시

사설

재단설립을 서두르자

일제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방법은 재단을 설립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대한변협의 기자회견장에서 강제징용으로 아버지를 잃은 유족의 발언이 있었다.

그들에게는 독립이 진정한 독립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도 아무런 위로도 배상도 받지 못한 그들에게는, 대한민국이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다. 징용에 끌려가고 위안부로 희생된 이들이 하늘 운명을 달라고 있는 지금에서야 대법원은 일제피해자의 청구권이 살아있다고 판결했다. 사람을 데려다 노동을 시켰으면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상식이다.

1965년 한일협정은 정부 간 협정이었을 뿐 개개 노동자, 국민에 대한 청구권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일본은 경제협력자금, 독립축하금이라고 규정했으나 한국정부는 강제병합의 보상금이라고 국민을 속였다.

일본 전범기업들이 임금채권 공탁금으로 일본 정부에 맡긴 돈이 10조원대라고 전해진다.

이 돈의 주인은 당연히 임금채권자, 징용피해자들이다. 우리 정부는 일제피해자들에 배상하겠다며 위원회를 만들고 신고를 받았다. 그 수가 23만명이 넘는 다. 그랬으면 당연히 이들에 대한 배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러나 정권 말기인 탓인지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 징용에 희생된 사람들의 피의 대가로 경제개발의 초석을 닦은 것이라면 이제는 정당한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독립이고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대한변협과 일변연이 법적 뒷받침을 하는 재단을 통해 배상이 이루어진다는 신뢰가 구축되면, 공탁금을 찾아오는 일도, 한·일 양국 기업들이 추가제소를 피하기 위해 기금을 회사하는 일도 순조로울 수 있다.

우리가 만들려는 재단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동아시아 일제 희생자들의 배상문제에도 모범이 될 것이며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서도 좋은 기반이 될 것이다.

가을학기(12강) : 남북 교류 · 협력 및 통일 법제 연구

Table with 6 columns: 강좌명, 강사, 비고, 강좌명, 강사, 비고. It lists various seminars and speakers for the autumn semester.

▶1면 '일제피해자'에서 계속 전망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23만명 징용채권 공탁금만 10조원

이수경 변호사도 답변에 나서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하며 국무총리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조사위원회'가 재단설립 시한을 2012년 3월까지라더니 4월로 미루고 재차 6월 말로 미루는 등 정부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일제피해자단체들도 연합회를 구성해 시위와 집회를 계속하겠다고 하며, 22일에도 태평양유족회와

함께 국회를 찾아 재단설립을 촉구할 계획을 밝혔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조사위원회에 피해신고한 징용피해자 및 유족은 2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봉태 변호사는 일본기업들이 강제징용 임금채권으로 일본 정부에 공탁한 돈만 해도 10조원에 이르러 이것만 찾아와도 재단설립의 기본자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최고재판소 판결도 재판을 통해 일제피해자를 구제할 수는 없으나 개인의 임금채권 청구권은 살아있는만큼 자발적으로 이행하라고 실시했음을 지적, 공탁금 회수가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 말미에는 이운재 일제피해자 유족 대표가 나와 "70년 세월 아버지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아버지라 불러 보지도 못한 한을 풀어달라"며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는 정부가 야속하기만 하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최봉태 변호사는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재단설립을 촉구해야만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는 재단이 설립될 것이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성명서를 발표한 다음날인 6월 22일은 1965년 한일양국 정부가 한일기본조약에 서명한 날이다.

【박신애 편집장 rawool32@koreanbar.or.kr】

대한변협신문 ©2012 2000년 3월 27일 창간 등록번호 서울다06743

대한변협신문 발행인 신영무 협회장 편집인 엄상익 공보이사 인쇄인 최낙관

대표전화 02) 3476-4000 팩시밀리 02) 3476-2771 기고·기사제보 02) 2087-7752 구독·광고문의 02) 2087-7754 홈페이지 www.koreanbar.or.kr 전자우편 news@koreanbar.or.kr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8-1 변호사회관 5층

Table with 2 columns: Department and Phone Number. Lists contact info for various departments like editorial, circulation, etc.

대한변협신문은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변협만평

이우정



변협, 일제강제동원 피해 지원재단 설립 촉구

대통령, 국무총리, 대일항쟁기조사지원위원회에 공문

대한변협은 지난 18일 이명박 대통령, 김황식 국무총리, 대일항쟁기조사지원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보상해줄 수 있는 재단을 속히 설립해 달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2010년 일본변호사연합회와 일제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한 공동 활동을 하기로 합의한 이래,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전 일제피해자인권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일제피해자의 보상 및 권리구제, 한일 간 정리해야 할 법적 문제 등을 연구해 오고 있다.

변협은 “대일항쟁기강제동원

피해자조사및국의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조사지원위원회)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지원재단과 관련된 행정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나, 특별법상 조사지원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12년 12월 31일 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그 이후에는 소관업무를 행정안전부가 승계하도록 되어있다”며 “조사위원회의 재단설립 추진 활동이 최근에 들어와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이유가 행정안전부의 비협조로 인한 협의 미진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최근의 대법원 판결로 인해 일제피해자 및 유족단체들

이 한목소리로 강제동원 피해 지원재단을 하루 빨리 설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마지막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고령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두 부처가 원만한 협의를 통해 강제동원 피해 지원재단 설립에 적극 나서달라”며 정부 및 관련 기관 모두 일제피해자 권리구제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일제에 의해 강제 징용된 한국인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기업이 배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회, 변호사 무료 의무연수 실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6일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제4차 무료 의무연수를 실시했다. 무료 의무연수는 서울회가 소속 회원들의 의무연수에 대한 비용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무료로 실시하는 전문연수다.

이번 연수는 ‘변호사가 알아야 할 법과 제도’를 주제로 황정근 변호사가 ‘개정 상법(회사편)의 주요 쟁점’에 대해, 서울대 김재형 교수가 ‘동산·채권 담보에 관한 법률

해석’에 대해, 법무법인 광장의 오창석 변호사가 ‘신탁법 개정의 영향’에 대해 강의했다. 이날 무료 교육에는 서울회 회원 249명이 참석했으며, 총 7시간의 의무전문연수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줄 예정이다.

서울회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회원의 전문성 강화는 물론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무료 의무연수를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관기관과 연계 통해 활성화 방안 모색”

변협, 18일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세미나 개최

대한변협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위원장 이광수)는 변협 산하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 본부와 각 지방회의 지부 간 정보 교류 및 변호사단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18일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장현길 북한이탈주민변호사단 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변호사단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와 변호사단 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 1부에서는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구·광주지부의 활동이 소개됐다. 장익현 대구지부장은 대구에 670여 명의 북한민이 거주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대구지부 창설 시기에 설립된 이주민지원센터와 협력해 북한이탈주민을 돕고 있다”며 “각종 지원센터 등과 적극 연계해 찾



아가는 법률상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재우 광주지부장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을 통해 북한민의 든든한 후원자

이자 멘토로 다가가는 기회가 되었다”며 “단순 상담이 아니라 고급적 그들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주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현안, 출입국 관련 문제 및 브로커 비용’을 주제로 강의한 송인호 한동대 법학부 교수는 최근 판례에서 탈북 브로커 계약을 일종의 위임계약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로 볼 것이 인지가 문제된다고 전했다. 송 교수는 “재중 북한민의 실태, 탈북브로커 계약의 현실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해 계약의 효력의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광수 위원장이 경기중앙회 황정민 변호사에게 북한이탈주민변호사단 위촉장을 수여했다.

등정

● 결혼

- ▷박상수 변호사(인천회 · 73년생) 본인 = 6월 17일(일), 032)322-5500
- ▷김이근 변호사(서울회 · 80년생) 본인 = 6월 22일(금), 02)6003-7000
- ▷정상수 변호사(부산회 · 56년생) 장남 영향 = 6월 23일(토), 010)7553-1184
- ▷정지원 변호사(서울회 · 80년생) 본인 = 6월 23일(토), 02)2046-0661
- ▷노성수 변호사(서울회 · 55년

- 생) 장남 준영 = 7월 1일(일) 오후 3시 빌라드베일리, 02)536-3358
- ▷이태훈 변호사(서울회 · 34년생) 차남 계철 = 7월 14일(토) 오후 1시 할렐루야교회, 02)573-3232

● 부음

- ▷김종건 변호사(서울회 · 35년생) 본인상 = 6월 15일(금)
- ▷하준필 변호사(서울회 · 74년생) 모친 상 = 6월 16일(토), 02)772-4426
- ▷김종승 변호사(대구회 · 28년생) 본인상 = 6월 18일(월)

www.rainbowlaw.or.kr

결혼이민자를 위한
온라인 무료법률상담

온라인법률상담센터

www.rainbowlaw.or.kr은 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족, 다문화 관련 종사자들이 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싶을 때 언제든지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전국 100여명의 변호사가 각자의 전문분야별로 상담 해드리며, 소송이 필요한 경우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02-3476-6515)의 법률구조로 연결해드립니다.

상담 분야

- 국적법
- 결혼중개업법
- 민사법
- 행정법
- 출입국관리법
- 형사법
- 가사법
- 기타

상담 방법

www.rainbowlaw.or.kr 로 방문

↓

원하는 언어선택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중국어, 필리핀 타갈로그어, 몽골어, 우즈베키스탄어, 러시아어, 태국어, 일본어, 영어, 한국어 중 선택)

↓

공개 상담 혹은 비공개상담으로 상담 글 게재
(이메일이나 핸드폰 번호를 남기면 답변 도착 알림)

↓

변호사 답변 완료

쓴소리 바른소리



엄상익 변호사·변협 공보이사

변호사 생활을 20년이 훨씬 넘게 해왔다. 가장 치욕적이고 자존심이 상할 때는 진실을 말했는데 그 모든 게 거짓으로 판정된 경우다. 물론 당사자의 말을 듣는 경우 진실은 상대적일 수 있다. 그러나 직접 체험한 경우는 다르다.

이런 경우가 있었다. 주가조작의 천재로 알려진 범죄인이 있었다. 그가 고소한 인물이 내가 맡은 의뢰인이었다. 그를 찾아갔다. 그의 눈빛 속에서 '너 정도의 순진한 변호사쯤이야' 하는 무시와 경멸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법조계의 현실을 이렇게 빈정거렸다.

“한 사람을 푼돌 말아 죽이는거 간단해. 몇 명이 짜고 한 사람을 고소인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참고인으로 만드는 거야. 담당검사가 기소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게 만드는 거지. 그런 사건을 무혐의로 만들 수 있는 검사는 없어. 바보 같은 법조계를 이용해서 한 사람 잡는 거 아주 쉽지.”

그의 돈에 법조계 주요인물의 상당수가 매수되어 있었다. 뇌물을 주는 방법도 비상했다. 평소에 미리 대상자의 토지를 몇 배 비싸게 사주는 방법 등으로 구성요건에 걸릴 일을 근본적으로 피했다. 내가 보기에 그는 악마의 지혜 수준이었다. 그는 내가 맡은 의뢰인도 그런 방법을 써서 법망에 걸리게 했다. 그가 내게 20억원을 주면 얹힌 법망을 풀어주겠다고 돈을 요구했다. 항소심에서 참고인들의 진술을 차례차례 번복해서 무죄를 선고받게 해주겠다는 것이었다. 그의 악마성을 어떻게 하면 폭로할까 고민했다. 때마침 동료 사이에서 존경받던 법관 한 분이 변호사 개업을 했다. 그를 찾아가 공동변호를 부탁했다. 그의 말은 재판장이 믿어줄 것 같았다. 악마는 절대 증거를 남기지 않았다. 재판장과 절친한 그가 듣기만 한다면 충분할 것 같았다. 법을 가

지고 노는데 교만의 극치에 이른 악마는 법복을 벗고 막 개업한 그 변호사에게도 같은 자랑을 했다. 판사의 세계에서 변호사의 세계에 첫발을 내디딘 그는 경악했다. 나는 굳은 결심을 하고 재판장 앞에서 사실을 폭로했다. 그리고 얼마 전 연방에서 판결을 했던 그의 절친한 동료 법관 출신을 증인으로 내세웠다. 내 말은 안 믿어도 적어도 함께 오랜 생활을 했던 동료의 말을 신경을 쓸 것 같았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반대였다. 판결문에 나의 주장과 동료 법관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고 결론을 냈다. 막 변호사가 된 그는 두 번째 경악했다. 나름대로 그런 결론을 내는 배경이 있을 것이다. 진실보다 판결 속에 전개되는 논리와 근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얼마 전 법정에서 담당판사에게 진실이 뭐냐고 질문을 한 적이 있다. 그는 자기는 기록 속의 사실만 본다고 했다. 그 말은 뒤집으면 현실 속의 당사자들의 절규와 진실은 무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 건물 내부의 판사들은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저들이 왜 그러지' 하면서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바라본다. 밖에서는 진실을 보지 못하는 판사들에게 종주먹질을 하면서 절규하고 눈물을 흘린다.

변호사의 자존심

법정이 거짓말 대희장 같다고 느낄 때가 많다. 선과 악의 다툼이 아니라 악과 더 질 나쁜 악의 대결장 같다. 그런 공해 속에서 판사들은 믿지 못하는 중병에 걸린다. 실험을 해본 적이 있다. 중견판사 출신에게 밀도 끝도 없이 “그렇지?”하고 물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아니”하고 대답했다. 법원은 어떤 말도 믿지 못하다가 마침내 진실마저 몽개버리기도 한다.

‘불신’ 병에 걸린 판사는 수많은 국민의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다. 그 원인과 배경에는 변호사들의 잘못이 존재한다. 며칠 전 30년 이상 법관 노릇을 한 친구에게 법대 위에서 본 변호사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느냐고 솔직히 말해달라고 했다. 그는 변호사를 ‘돈 몇 푼 받아먹고 거짓말이나 해 주는 사람’으로 여겼다고 솔직히 대답을 해 주었다. 또 변호사들은 판사 때문에 먹고 산다고 생각했었다고 했다.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법정에 들어가면 판사의 눈빛에서 이미 느끼고 있던 사실을 확인한 셈이기도 했다. 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변호사들이 자존심을 찾는 운동이라도 벌였으면 좋겠다. 진실을 알고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모두가 사는 길이다.

eomsangik@hanmail.net



변협, 납북자 송환촉구 세미나

신속자 모녀 등...北 인권상황 개선방안 모색

대한변호사협회는 6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에서 '신속자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본 전시·전후 납북자 송환 촉구 세미나'를 개최했다.

신영무 협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국내외의 급격한 정치·경제적 환경 변화 속에서 북한의 인권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이때 전시·전후 납북자 문제의 현안과 해결방안, 귀환실태와 송환방안 등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라며 “대한변호사협회는 정부에 대해 납북자 송환에 범국민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한편, 앞으로도 전시·전후납북자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보완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제성호 중앙대 법전원 교수,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김웅기 변호사, 구본학 한국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발제자로 참석했으며, 이미일 6·25 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회장, 정소운 통일부 이산가족과 과장, 정재훈 변호사, 이영임 변호사,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최수영 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6·25전쟁 납북자 문제의 현안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오경섭 박사는 “전시납북자문제는 남북한 당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북한은 당국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행해진 전시 납북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조사 사업을 진행해야 하고, 한국정부는 남북회담과 대화채널을 통해 북한정권을 상대로 북한 당국의 공식사과, 자료제공, 서신교환 및 유해송환, 상봉 및 송환 등을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후납북자의 귀환실태와 송환방안에 대해 발표한 김웅기 변호사는 “납북자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은 납북자 송환”이라며 해결 방안으로 북한 측에 진상규명 요구, 국민여론 계몽활동 강화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납북자 귀환위원회(가칭) 설립, 납북자 구출활동 지원제도 마련, NGO의 문제제기 및 개선책 요구, 국제적 연대 강화 등을 제안했다.

형법 중요 판례가 머리에 쏙쏙!!!



< 필수판례 99개 >



< 필수판례 109개 >

<출간에 정만화판례시리즈>



이영욱 변호사의 동영상 강의 www.lec.co.kr

글 : 오영근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그림 : 이영욱(변호사)

“인권 경찰 추천해 주세요”

제2회 인권봉사상 후보 모집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옥환)가 제2회 인권봉사상 수상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서울 관내 경찰서(지구대 포함) 또는 소속 경찰관이 추천대상이며 인권존중과 사회정의 실현에 공적이 있으면 추천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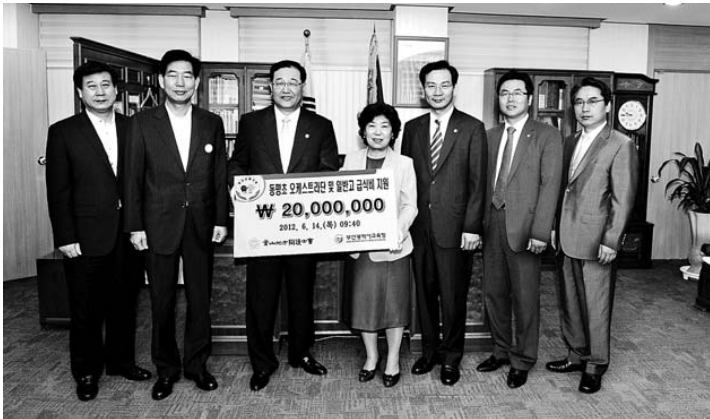
추천 마감일은 8월 3일이고 시상은 서울회 제105주년 기념일인 9월 20일에 진행된다. 수상자에게는 경

찰인권상패와 부상이 주어질 예정이다. 수상후보자 추천 시에는 추천서, 피추천자의 이력 및 공적서, 기타 증빙자료를 서울회 인권팀 이메일(human@seoulbar.or.kr) 또는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인권봉사상’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 받는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인권보호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경찰(또는 경찰서 등)의 노고를 격려해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해 제정됐다. 제1회 인권봉사상

수상자로는 유치인의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해 유치인의 인권보호와 유치장내 인권존중 환경 정착을 위해 기여한 성북경찰서 수사지원팀장 배용귀 경위와 ‘꽃보다 아름다운 상담실’을 운영하여 아동·여성·비행청소년·가정폭력피해자 등의 인권보호에 기여한 서초경찰서 김보수 경위가 선정된 바 있다.

서울회 관계자는 “서민친화적 치안행정을 통해 억울하고 소외받는 이웃을 위해 앞장서온 경찰관을 적극 발굴해 포상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추천해 주시면 한다”고 전했다.



부산회, 부산광역시교육청과 업무협약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장준동)는 지난 14일 부산광역시교육청과 ‘교육기부도시 부산문화 형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부산회는 부산 동평초등학교 오케스트라단 운영비와 일반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석식비 20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장 회장은 “앞으로

도 부산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이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큰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부산회는 18일 부산광역시 치과의사회와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상호간 업무협조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기획됐으며, 무료 법률상담과 무료치과의료상담 공동 개최, 법률 및 치과의료 강습회 공동 개최, 법률 및 치과의료 학술정보 상호교류,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소식지 발행, 사례집 제작 등을 통한 양기관의 홍보 및 정보제공, 공익사업 수행 및 주민복지증진에 필요한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다.

불특정다수 소송인단 모집광고 안돼

변협 “당사자 동의없어 규정 위반” 유권해석

최근 모 법무법인에서 관공서 등을 상대로 특정사건의 소송인단 모집 서면광고를 송부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및 변호사 업무광고규정에 위반되는지 문의해 왔다.

이에 변협은 기본적으로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위반되지만,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광고를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대한변협은 답변서에서 “변호사가 취급한 업무에 관하여 부당한 정보제공을 방지함으로써 고객의 변호사 선택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고 변호사 시장의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한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4조와 5조는 특정사건과 관련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요청이나 동의 없이 방문하거나, 전화·팩스·우편·전자우편·문자 메시지 등 기타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접촉하여 의뢰를 권유하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광고의 내용과 방법을 제한하고 있다.

같은 이유로,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특정사건의 소송인단을 모집하는 내용으로 아파트의 각 호수 우편함에 광고물을 비치하거나 아파트 관리비청구서 하단에 게재하는 행위, 아파트 내 안내방송을 통해 광고하는 행위 등이 가능한지 묻는 질의에도 현행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 역시 특정사건에 관하여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일방적으로 접촉하는 방식으로 당해 사건의 의뢰를 권유하는 광고는 그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요청이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규정한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4조와 제5조 때문이다.

한편,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에 광고를 하는 것은 현행 변호사업무광고규정상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광고방법으로 제한하고 있어 허용되지 않지만, 아파트 내·외부 게시판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일반적인 광고로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가 있을 경우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변호사가 사는 법



김태섭 변호사

변호인의 역할에 대한 수사기관의 인식은 과거에 비해 많이 나아졌다. 이제는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겠다는 변호인에게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어졌고 조사 과정에서도 변호인이 의견을 제시하면 반영하려는 노력을 한다. 그러나 아직도 인식의 전환이 대폭 필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피의자에 대한 소환이다. 선임계를 제출하더라도 특별히 부탁을 하지 않는 이상 대개 직접 피의자에게 연락을 한다. 그러나 이것은 변호인과 피의인 사이의 신뢰를 해치는 것으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법조윤리에 위배될 소지도 있다.

검찰의 수사를 받던 의뢰인이 사업상 해

외출장을 가야 하는데 출국금지를 잠시 해제 받을 수 없겠느냐고 상담을 해온 일이 있다. 전부터 얘기가 있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주간 일본에 다녀오고 싶다는 것이었다. 혐의 내용이 가볍지 않았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웠지만 담당 검사를 찾아가서 부탁을 했다. 검사는 의외로 순순히 출국금지를 해제해주겠다고 했다. 나는 고마움을 표하고 피의자가 반드시 소환에 응할 것이라는 말을 하고 돌아왔다.

그런데 2주 후에 돌아오겠다는 의뢰인으로부터 예정된 날짜에 귀국하기 어렵다는

라키 오면 출석을 시킬 요량으로 그냥 놓아 두기로 했다.

의뢰인은 애초에 약속한 2주를 훌쩍 넘겨서 몇 개월이 지난 후에야 돌아왔다. 생각지 못했던 난관을 만나서 좌절도 겪었지만 결국 투자를 받기로 약속을 했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검사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까봐 조마조마했지만, 다른 사건 수사로 바빴는지 연락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다음날 검사를 찾아갔다.

그런데 막상 나를 맞은 검사는 상당히 화를 냈다. 피의자를 조사하기 위해서 여러 차

어떻게 연락을 하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오히려 당사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는 것이 신속한 일처리가 아니겠느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다. 수사기관에서 소환당하는 것은 당사자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인데, 변호인이 그 통지를 당사자로부터 들어야 한다면 이미 둘 사이의 신뢰는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상대방 당사자와 변호인 혹은 대리인 사이의 신뢰를 침해하지 않는 것은 법조윤리의 기본이다.

이혼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장미의 전쟁’에서 남편의 변호사로 나오는 데니 드비토는 의뢰인의 아내가 불쑥 찾아오자 화들짝 놀라면서 대화 내용을 녹음하겠다고 말을 한다.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먼저 접근을 하면 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예고 없이 방문을 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두려고 했던 것이다. 가사 사건에서도 이렇진대 형사 사건은 어떻겠는가.

우리의 형사절차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작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피의자의 인권이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 변호인과 피의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존중하는 것은 인권보호를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일이며 그것은 소환 단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별 문제의식 없이 이루어지는 소환 방식의 개선이 있기를 기대한다.

kts@lawkh.com

소환방식 유감

연락이 왔다.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사와 약속을 했던 나는 난처한 입장이 되었지만 바로 돌아오면 사업이 망한다는 의뢰인의 하소연을 외면하기도 어려웠다. 외국이라고는 해도 전화만 하면 몇 시간 후에 돌아올 수 있는 곳에 있으니 검찰에서 연락이 오면 바로 귀국하라고 단단히 일렀다. 다행히 그때까지 소환 통보는 없었다. 담당 검사를 찾아가서 사정을 설명할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연

례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서 소환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변호인이 약속을 어기고 피의자를 도피시킨 것이냐는 취지의 얘기까지 했다. 그러나 나로서는 검사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약속된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것은 피의자의 잘못이고 이에 대해서 변호인에게 항의를 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변호인이 선임된 피의자를 소환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인을 통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저자에게 듣는 책이야기



파생금융거래와 법

박 준(사시 18회) 서울대 로스쿨 교수, 도서출판 소화

파생금융거래는 때로는 기업의 위험관리를 위한 현대 금융시장의 가장 성공적인 발명품으로 높이 평가되기

도 하지만, 때로는 기업을 도산시키고 금융위기를 불러오는 위험한 투기적 금융상품으로 알려지기도 한다.

파생금융거래의 중요성에 비춰 볼 때 법적인 측면에서의 검토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금융법이 발전한 외국에서도 다른 금융거래에 비해 파생금융거래에 대한 법학 논문이나 서적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우리나라는 특히 더 그렇다. 이러한 현상은 파생금융거래가 가지는 고도의 전문성과 복잡성으로 인한 일종의 진입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파생금융거래에 관한 다각적인 법적 검토를 시도한 이 책의 발간이 더욱 많은 법률가들이 파생금융거래의 실무와 법리를 이해하고, 파생금융거래에 관한 법적인 논의를 심화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형사절차법

위재민(사시 25회), 한국표준협회미디어

이 책은 형사소송법을 실무의 관점에서 해설한 설명서이다.

기존의 형사소송법 해설서와는 달리 내용을 절차 진행의 순서인 수사-공판-집행의 순서대로 구성하였다.

20여년간 검사로서 근무하고, 특히 사법연수원 교수(2003~2004년)와 법무연수원 교수(2007~2008년)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검사 재직 중인 2010년 초판을 낸 이래 개정 및 제정법을 반영하여 이번에 제3판을 발간한 것이다.

이 책이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그 전체를 이해하기 위한 입문서로, 형사소송절차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일상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법적 근거나 정확한 내용의 확인이 필요할 때 참고할 자료로, 로스쿨 학생에게는 형사소송실무 전반을 이해하고, 변호사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소송 없는 경영

나국주(사시 30회), 21세기북스

우리나라에서 소송은 손해나는 짓이다. 소송 해보아 받을 돈을 받거나 실제로 손해난 것을 받는 정도다. 이

것마저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변호사 비용이 들고 해서, 본전 찾지마져 힘들다고 봐야 한다.

소송은 마지막 수단이라 생각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소송을 하지 않고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다. 소송은 일이 벌어진 다음에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감정적이고 비효율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다. 특히 개인보다 법적인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가들은 소송을 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잘 알아야 하고 또 익숙해져야 한다.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인이 사전적·예방적으로 법률문제를 처리하는 것의 중요성이나 경제성을 재미있고 쉬운 이야기를 통해 깨닫게 하고 또 그 방법을 알려 줌으로써 법률경제력을 높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이 책을 출판했다.



형사소송과 과학적 증거

권영범(사시 31회), 세창출판사

과학적 수사는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관행을 타파하고 미궁에 빠진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등 형사소송이 지향하는 진실발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적 증거를 잘못 사용할 경우 오히려 무고한 사람을 처벌할 수도 있게 된다. 현재 과학적 증거는 대부분 재판에서 전문가가 법정에 출두하여 그들이 작성한 감정서나 분석서 등을 설명하고 있는 형태로 현출되고 있다. 그러나 과학자란 과학영역에 있어서 불완전한 증인일 뿐이므로 재판 시 법관은 합리성에 따라 이를 다시 평가하여야 한다.

이 책은 형사소송에서 과학적 증거가 어떤 의의가 있고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법률실무가와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자, 그 동안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다시 정리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출간한 것이다.



폭행범죄시 '만취상태'는 刑 가중사유

양형위,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범죄 기준안 확정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 前 고려대총장)는 18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42차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범죄양형기준안을 의결하고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 의결했다.

선거범죄의 경우 유권자나 후보자를 매수하는 '매수 및 이해유도' 유형에 대해서는 선거에 대한 영향력이 크고 법정형도 높은 점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징역형만을 권고하는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했고,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유형,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유형에도 특별한 감경사유가 없는 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만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폭력범죄의 경우는 상습범과 누범을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 더 높은 형량범위를 권고하고 만취상태를 원인으로 한 감경을 제한하거나 만취상태 자체를 가중인자로 반영토록 했다.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

해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해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범행 당시의 심신미약상태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하도록 했다. 고의로 범행을 위해 만취한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음주를 감경요소로는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 증권·금융범죄의 양형기준은 다수의 일반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점을 반영, 종래 법원의 양형관행보다 대폭 상향했다. '시세조종행위' 중 이득액 또는 회피손실액이 5억원 이상이고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했다. 자본시장질서를 교란해 막대한 이득을 취득하는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범죄에 대해 기본적으로 사기범죄에 준해 형량범위를 정하되,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절차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이득액이 50억원 또는 300억원 이상인 중대 범죄의 경우에는 사기범죄보다 형량범위를 높게 해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지식재산권 범죄에 대해서는

전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등록권리 침해행위 및 저작권침해행위를 중심으로 종래 관행보다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했다. 저작권 침해행위로 매출이 크거나 획기적 진보를 이룬 기술을 침해한 경우,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는 가중하도록 했다.

교통범죄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미한 범죄는 제외하고 가벌성이 높은 대인 교통사고 범죄를 중심으로 양형기준을 설정, '치사후 유기도주' 유형을 살인범죄의 한 유형인 '참작 동기 살인'과 권고형량범위를 동일하게 설정하기로 했다.

양형위가 발표한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범죄 양형기준은 오는 29일자 관보에 게재된 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선거범죄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7월 16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공청회를 갖는다. 최종의결은 8월 20일로 예정돼 있다.

폭력범죄 양형기준

1. 일반적인 상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상해	2월 - 1년	4월 - 1년6월	6월 - 2년
2	중상해	6월 - 1년6월	1년 - 2년	1년6월 - 3년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2년 - 4년	3년 - 5년	4년 - 7년
4	보복목적 상해	6월 - 1년6월	1년 - 2년	1년6월 - 3년

2.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3년 - 5년
2	상습특수상해·누범특수상해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

3. 폭행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폭행	8월 이하	2월 - 10월	4월 - 1년
2	폭행치상	2월 - 1년6월	4월 - 2년	6월 - 3년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5년
4	운전자 폭행치상	10월 - 2년	1년6월 - 3년	2년 - 4년
5	운전자 폭행치사	2년 - 4년	3년 - 5년	4년 - 7년
6	상습·누범·특수폭행	4월 - 1년2월	6월 - 1년10월	8월 - 2년4월
7	보복목적 폭행	4월 - 1년4월	10월 - 2년	1년 - 2년6월

4. 협박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협박	8월 이하	2월 - 1년	4월 - 1년6월
2	운전자 협박치상	10월 - 2년	1년6월 - 3년	2년 - 4년
3	운전자 협박치사	2년 - 4년	3년 - 5년	4년 - 7년
4	상습·누범·특수협박	4월 - 1년	6월 - 1년6월	8월 - 2년
5	보복목적 협박	4월 - 1년4월	10월 - 2년	1년 - 2년6월

“우는 사람과 함께 울 줄 아는 법조인이 되길”

Interview

“변호사가 사건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로펌의 전체적인 방향, 미래를 총체적으로 고민해야 하더라고요. 모든 게 새롭고 흥미진진합니다.”

이번 ‘변협이 만난 사람’은 인터뷰 대상자 중 가장 변호사 연차가 낮은 사람이다. 변호사로 새 출발한 지 막 100일이 돼가는 윤재운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를 만났다.

“법원장을 하시다 바로 변호사가 된 소감은 어떠세요?”

“춘천지법 법원장 시절은 참 행복했어요. 작은 법원이지만 사법행정적 측면에서 재판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고민도 많이 했고 할 일도 많았습니다. 특히나 감사한 점은 지법 원장이 고등법원 재판장이 돼서 계속 재판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2010년 8월에 부임해선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로 민·형사재판을 전부 처리해서 무척 바빴어요. 지난해 2월에 김인겸 부장이 와서 나누니까 한숨 돌렸죠. 특히나 강원지방변호사회 이택수 회장님 등 변호사회에서도 많이 협조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재판의 주체는 판사만이 아니라 변호사이며, 변호사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우리 법조계에서 변호사의 정체성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어쨌든 새로운 일을 시작하니 힘든가 봐요. 몇 십년 만에 살이 빠지더군요.”

법원장을 하다 법무법인의 대표로 갔다는 평면적 이력 외에 그의 행보에 언론이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하나하나 알아가기로 했다.

변호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법원에 대한 애정을 많이 드러내면서도 이제는 변호사로 고민이 줄어들었음을 느끼게 했다.

“사실 우리 법원은 재판시스템 개선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왔고 실질적인 효과도 많이 얻었습니다. 이제는 변호사들이 연구하고 노력해 개선안을 내놓을 때라는 생각입니다. 요령부득인 준비서면도 참 많습니다. 주장의 연결이 매끄럽지 못한 서면은 말할 것도 없고요. 변론방식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종에 와서 이러한 생각을 현실화시키려고 했더니 돌아온 대답.

“변호사들이 모이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하하. 한 로펌에서 선도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한변협 차원에서 연구하고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변호사연수원에서 교육하고 말입니다.”

요새는 평생법관제도 있고 법원장을 하다 재판을 하는 부장판사로 돌아가는 일이 명예롭게 여겨지는 상황에서 법관이 가장 어울리던 윤재운 법원장의 갑작스러운 사표는 주변을 놀라게 했다.

“세종에서 제의를 받고 3~4일 고민하다 결심했습니다. 이전부터 변호사 생활을 꼭 해 봐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계속 법원에서 있다 보니 시간이 자꾸 흘렀죠. 법관이



라는 게 무대 위에 펼쳐진 증거를 보게 되잖아요. 30년 동안 무대 위만 바라다보니 이 무대를 준비하는 과정은 어떤지 무대 뒤, 무대 아래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하더군요. 더 늦추면 못할 거 같았어요. 전격적으로 사직서를 내고 보니 인생 2막이란 생각에 덜컥 겁이 나더군요. 아, 세종은 제가 원래 호감을 느끼던 로펌이었어요. 제가 심약해서 단독개업은 엄두도 못 냈고요. 아내도 반대는 않더군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활발한 변호사로서의 생활을 해보고 싶어 용기를 썼습니다.”

그가 변호사가 되어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판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가’를 느낀 것이라고 한다. 그는 변호사 100일을 지내면서 한마디로 ‘법관의 재발견’을 하였다고 말한다. 법관이 얼마나 중요한 소임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절실하게 느끼며 그 일을 30년이나 무사히 해왔다는 사실에 새삼스레 감사하게 된다고 몇 번을 언급했다.

그러나 사실, 그는 무사히 판사생활을 한 정도가 아니다. 그냥 지나치면 될 일도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까, 개선점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실천해온 보기 드문 판사였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건축 전문 재판부를 맡고 있을 때는 ‘건설분쟁관계법’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다. 건축 전문 재판부 3년6개월의 성과물이었다. 우리나라 최초로 건설분쟁 관련 책이어서 공전의 히트를 쳤다. 2006년에는 언론중재부장을 3년6개월 역임하며 사례를 모아 ‘언론분쟁과 법’이라는 책을 냈다. 철우언론법상을 수상하는 등 큰 반향을 일으켰다. 1984년에 가정법원 판사로 재직할 때는 ‘소년자원보호자제도’를 창안하기도 했다. 소년사건을 해보니 조금만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면 다시 올바른 길을 찾아가 아이들이 안타까웠다. 소년원으로 보내기보다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신신당부하며 아이들을 맡겼다. 제1호는 ‘십대들의 쪽지’라는 잡지로 유명한故 김형모씨였고 친한 변호사, 같은 교회 교인들이 동원됐다. 이제는 자연스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윤재운

럽게 소년사건에서 자원보호자를 지정할 정도로 확립된 제도가 됐다.

“건설과 언론 분야의 전문가가 된 배경은 뭔가요?”

“배경이랄 것까지야 있나요. 건축 전문 재판부를 맡고 보니 참고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거예요. 공부해가며 재판을 했죠. 대한변협에서 2002년에 변호사연수에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40쪽짜리 강의록을 만들어서 강의를 했는데 그게 공전의 히트를 친 겁니다. 워낙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던 때여서요. 그걸 써먹기는 아깝고 해서 재판을 하면서 2년 동안 휴일 없이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해 책으로 냈어요. 그래서 초반은 끔찍하도록 부실합니다. 그런데도 하도

그가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내는 책과 연구, 재판에만 몰두해왔다고 보면 오산이다. 갯생보호단체인 담안선교회회를 비롯, 부스리기나눔회, 화곡동 재활시설 등 사회단체의 봉사와 후원도 계속해왔다. 아무리 물어도 대답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이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할 수 없어 물어두기로 했다. 그러나 그가 ‘월간 에세이’ ‘좋은 생각’ 등에 꾸준히 기고하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로하고 가슴 따뜻하게 해주는 글들을 써 온 것은 유명하다. 그의 칼럼집 ‘우는 사람과 함께 울라’는 글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준다. 학술적 업적도 훌륭하지만 사람을 위로하는 그의 글이야말로 우리 법조계가 가진 훌륭한 자산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가 천착하고 있는 문제의식은 아주 근본적인 것이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 법관생활을 할 때도 그랬고 무대 뒤를 보고 싶어 변호사가 된 것도 그 화두에 매달렸기 때문이다. 재판하면서 검사와 변호사가 짜놓은 틀이 아니라 인간을 보고, 인간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과 자제가 그를 더 나은 판사가 되도록 이끈 것이다.

그는 형사재판에서 선고를 할 때 단순히 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준비를 해서 형을 선고하는 이유와 바람 등을 설명하는 판사로 유명했다. 2000년대 초반 미국에서 ‘치유적 사법’이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를 접한 윤재운 변호사는 크게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아!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재판절차에 관여하는 경찰, 검찰, 판사 등 사법담당자 모두가 피고인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니 좋은 태도, 좋은 영향으로 그가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개선시키자는 방법

판사는 무대 위만 봐...무대 뒤 보고파 변호사 돼

건설분쟁관계법, 언론분쟁과 법 등 저서 큰 성공

치유적 사법 실천, 사람들 위로하는 에세이 유명

반응이 좋아 계속 개정판을 냈고 2011년에 4번째 나온 개정판은 책 같아졌습니다. 그걸요, 여름 휴가철에 좀 여유 있게 쓴 부분은 읽을 만하고 평일 날 야근하며 쓴 부분은 대충 대충 쓴 티가 나는 겁니다. 하하. 그렇게 쓴 책이 대우받는 거 보면 우리나라 전문성이 약한 거 같아요. 한 10년 했더니 전문가 소리 들어요. 겸손의 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연수나 강의 나가면 그래요. 한 10년만 한 분야를 파고들어 공부하고 1년에 논문 1편씩만 발표하면 전문가 된다고요. 남들이 하지 않는 분야를 택해 1년의 절반 정도를 투자해서 논문을 한 편씩 써서 열 편만 쓰면 된다고요.”

윤재운 변호사의 그 말을 들으며 든 생각은 ‘말이 쉽지’였다. 재판하기도 바쁜 와중에 책 쓰라 연구하라 대개의 사람들이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일임엔 틀림없다.

론이다. 예를 들어 마약사범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고 교육을 받도록 한 다음 법정에서 졸업식을 하는 것이다. 판사가 축하의 말도 해주고 가족과 자신을 돌봐준 사회사업가도 배석한 가운데 교육을 받은 소감을 말하면 함께 축하해주고 바른길을 가도록 함께 다짐하는 행사를 갖는다는 것이다. 법정에서 판사가 같은 형을 선고하더라도 “넌 쓰레기야” 하는 눈빛으로 하는 것과 “당신이 살아온 과정을 보니 잠깐의 실수를 하였지만 다시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가 생깁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

“물론 이런 말을 할 때 90% 이상의 피고인이 제대로 듣지 않고 헛소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게 보여요. 그러나 100명 중 한 명이라도 자신에 대한 타인의

기대를 생각하고 위로받을 수 있다면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퇴임 전 한 통의 편지를 받았어요. 기억도 안 나는 피고인인데요, ‘넌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에 기대어 3년째 수감생활을 견디고 있다’는 편지였어요. 형사재판만이 아니라 민사재판을 할 때도 고통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재판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사법현실은 시간에 쫓기고 사건 빨리 폐는 판사가 훌륭한 판사다. 신속이나 적정이라는 사법부의 오랜 고민이지만 날로 늘어나는 사건 속에서 판사는 마치 판결 기계처럼 판결할 것을 요구받는다. 이제는 당사자들도 조정이 아닌 재판을 원한다면 시간을 요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정확한 판결이 되도록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 윤재운 변호사의 의견이다.

“판사라는 건 자기확신을 갖는 게 제일 위험한 거 같아요. 항상 불안감을 가져야 돼요. 재판경험이 쌓일수록 자신감이 없어지거든요. 재판은 사건 이후 한참 시간이 지나서 하게 되잖아요. 증거는 화석화되고 범행 직후, 수사단계, 재판단계 증언은 다 달라지고 또 말이라는 게 한번 우연히 뱉어지고 나면 의식을 지배하게 돼서 사실로 믿는 경향도 있고요.”

계속 판사라는 직업의 어려움, 부담에 관한 이야기다. 아무래도 그의 의식은 아직 판사인가 보다.

“어렸을 땐 어땀어요?”

“3남1녀 중 장남이에요. 겁이 많고 공상가였죠. 서울 변두리 학교에 다녔는데 그때도 생각나요. 초등학교에도 정치가 있구나, 생

각했던 거요. 아이들 사이의 알력을 조정하고 화합하게 만드는 일이 재밌었어요. 전 근본적으로 사람에 관한 관심이 컸던 거 같아요. 그래서 사회학과 같은데 가고 싶었는데 아버지 소원이 워낙 컸죠. 고시공부요? 그야말로 진흙밭길이었어요. 아버지가 조그만 제 재소를 하했는데 동업자의 꼬드김에 빠져 수출을 해보자고 나섰다 완전히 당했어요. 동업자는 자금을 몽땅 들고 해외로 도망쳐버리고 아버지는 구속되었어요. 아버지를 도와드리던 저는 1년간 지명수배를 당했고요. 앞치마 데 댈친 격으로 폐결핵 3기였어요. 끼니마다 한 주먹씩 약을 먹었어요. 얼마나 독한 약인지 이름을 아직도 안 잊어버렸어요. 하이파스랑 마이암부톨. 끔찍한 20대를 보내고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피의자신분이 어떤 것인지 경험했죠. 아버지도 곧 집행유예로 나오시고 신앙생활하시며 잘 사셨어요. 그래도 그때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제가 그래도 웬만한 판사로 지내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담담히 웃으며 말하는 기억이지만 공직생활 중에는 한 번도 이 일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을 만큼 조심스럽고 건드릴 수 없는 트라우마였다. 변호사가 되고서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붓물 터지듯 그때 기억을 말하는 자신을 보고 놀랐다고 한다. 그렇게 억눌린 기억의 편린을 꺼내 들자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한다.

“딸만 둘이시죠?”

“네. 이렇게 세상이 빨리 변할 줄 몰랐어요. 이제는 딸만 둘인 게 자랑이고 복이더라고요.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이니 열심히 새

로운 것에 적응해야죠. 6년이면 65세 정년이니 그때 아름답게 퇴장하도록 열심히 일해야죠. 이제는 사실 돈벌이보다는 의미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가의 가(家)는 일가를 이룬다는 뜻이잖아요. 건전한 권위, 품위 있는 존재로 인정받으려면 인간을 이해하려는 자세, 겸손함, 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가져야 해요. 상습범죄자에 대해서도 40대에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젠 그들이 상처투성이에다 교육받지 못하고 가족도 없는, 사회시스템의 피해자로 보여요. 그들 대부분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피해해진 사람들입니다. 부자들도 많은 이들이 고통받는 것 같아요. 행복의 비결은 자신과 타인이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진짜로 믿는 데 있어요. 인간은 다 존엄하다는 말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존재가 법률가여야 할 것입니다.”

그와 한 시간여 대화를 나누는 동안 마음은 편안해지고 머릿속은 맑아지는 기분이었다. 영혼이 맑은 사람과 함께하니 그 정화의 기운을 나눠 받은 기분일까. 좋은 말들을 청한 김에 청년변호사에게 해주고픈 말을 청했다.

“첫째는 인문학적 교양을 쌓으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인문학은 인간과 세상에 대해 높은 곳에서 정확히 보는 것입니다. 통찰력이랄까 지혜, 진실을 볼 줄 아는 눈을 키우는 작업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한 진짜 연

민을 품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연민을 가지고 진정한 관심으로 타인을 대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성숙한 인간의 지표입니다.”

안셀름 그웬이라는 독일신부는 “지혜로운 노인은 세상의 축복”이라고 말했다. 아직 운재운 변호사를 노인이라 부를 순 없지만 그가 80대가 될 즈음에는 우리가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법조원로로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들로 그를 만나고 돌아서는 길이 행복했다.

/ 박신애 편집장



생각하는 숲



박수연 변호사

일은 본래 몰아쳐 오는 것일까? 정신없이 밀린 일을 처리하고 한숨 돌릴 만하면 어김없이 새로운 일거리가 가을 낙엽처럼 우수수 쏟아진다. 연이은 회의와 자문과 상담에 정신은 거의 공황상태이고, 코앞에 닥친 서면 마감일은 마수처럼 점점 목을 죄어온다. 소송위임장에 도장을 찍는 순간 나의 자유는 의뢰인의 손아귀로 넘어가고, 나는 용병처럼 전장을 끌려다니며 괴로운 싸움들을 이어가야 한다.

내 모든 정기가 쪽쪽 빨려나가는 느낌, 내 몸이 소모품처럼 마구 혹사당하는 느낌이 든다면 내에 대한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다른 사람들 뒤치다꺼리에 지친 내게도 일주일에 한 번, 아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오직 나만을 위한 시간을 선물하는 것은 내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지 모른다.

몇 년 전, 나는 수채화를 시작했다. 고등

나를 위한 위로

학교 졸업 이후 그림이라곤 그려본 적이 없고 그림에 딱히 소질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림이 그리고 싶어졌다. 무작정 화판과 이젤, 수채화 용품을 샀다. 그리고 일요일 오전이 되면 기분 좋은 음악을 틀고, 커피를 끓이고, 그림을 그렸다.

어떤 이유도 목적도 없이 순수한 재미를 위해 뭔가를 한다는 것은 더없이 행복했다. 화가가 아니기에 아무도 내게 마감일을 들이대며 독촉하지 않았고, 잘했느니 못했느니 평가하지 않았다. 이론도 기교도 몰랐지만 그냥 내키는 대로 선을 긋고 색을 칠하고, 다시 색을 닦아내고 새로운 색을 덧입혔다.

포도송이에 빛과 그림자를 넣고, 식탁보에 주름을 세우고, 건물에 원근을 살리다 보면 온갖 잡념이 사라졌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니 신문지가 구겨진 모습, 얼룩진 공과금 고지서가 모두 아름다운 소재였다. 사과의 생김생김을 처음으로 자세히 들여다보았고, 비 오는 날 작은 웅덩이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얼마나 예쁜 물결을 만드는지 보았다.

그러다 문득 일요일 오전 그 몇 시간이 나

의 지친 몸과 마음을 많이 위로하고 있음을 알았다. 돈을 위한 일도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일도 아니고, 나의 즐거움이 유일한 목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저 좋았다. 마음이 치유되는 기분이 들면서 긍정의 기운과 의욕이 솟았고, 일상이 즐거워졌다.

자신을 위한 위로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나뿐만이 아니다. ‘혼자 사는 즐거움’이란 책을 쓴 사라 밴 브레스넬은 정기적인 마사지를 통해 자신을 위로하는 것이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찾는 길이라고 말한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면 고요한 마사지실에서 한 시간 동안 홀로 있어보기를 작가는 권한다.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과 아로

윌리엄 H. 헨트 (1790~1864)의 수채화 작품 '자두, 복숭아 그리고 헤이즐넛 (Plums, peaches and hazelnuts)'



마 오일의 향으로 감각을 깨우고, 얼굴과 몸, 특히 발과 발가락을 최면을 걸듯 쓰다듬는다. 부드러운 손길로 내 모든 고단함을 이해한다는 듯 몸 구석구석을 다정히 다독여준다. 몸이 소중하게 다루어지는 느낌만으로도 마음은 평화롭고 느긋해지며 자연스러운 행복감이 생겨난다. 마사지를 통해 깊은 위로를 받는 것은 예방의학과 마찬가지로 병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힘이 있다고 한다.

변호사로 사는 우리네 삶은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건네주는 삶이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여 누군가를 위로할 힘을 잃어가고 있다. 이제, 나조차도 소홀히 대해왔던 나에게 따뜻한 위로 한마디를 건넬 때다.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으니 말이다.

sypark@seoulbar.or.kr

즐거운 편지



윤배경 변호사

치열했던 19대 총선의 열기와 후유증이 채 가시기 전에 고등학교 동창 몇몇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자연스럽게 이야기는 공천과정에서 탈락한 정치후보자들, 공천이란 관문을 통과하였으나 선거운동 중에 자의반 타의반 사퇴한 사람들, 총선에서는 승리했으나 여전히 사퇴 압력을 받는 인물들에게로 이어졌다.

짚어보니 출사표를 던졌다가 다시 거두어 들이게 된 연유는 사람들의 수만큼이나 다양했다. 공금을 횡령했던 사장님, 공인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려 했던 학자, 논문을 표절학 박사, 부동산 투기를 한 전직 고위 공직자, 외도를 한 유부남, 친인척 사이에 주문의 주인공이 된 아저씨 등 가지가지였다. 서로 신문, 방송 그리고 떠도는 소문을 종합하여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렇게 즐거운 막걸리 안주가 있을 수 없었다. 보수든 진보든 아니면 여든 아든, 각자의 정치적 성향과는 상관

없이 다들 한심스럽다는 인식에 뜨거운 공감함을 표시했다.

그러다가 경기도 남양주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한 친구가 말했다. “몇 년 전 지방의회 선거 때가 되자 한 정당의 관계자가 와서 나보고 지방의회 후보자로 나가보라고 하더라고...” 그 친구는 토목건설 계통에서 일하는 사업가다.

동반자들이 호기심에 물었다. “그래서?” 그가 대답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지하게 접근하길래 고민을 해 보았지, 아주 심각하게. 그러다가, 거절했어.”

“왜?” 가장 대답이 필요한 질문이었다. “생각해봐라. 내가 그 동안 지은 죄가 얼

수 없이 자행되어야 한단다. 그는 과거나 현재나 거의 매일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거나 가끔 형사적으로도 ‘큰일’ 이 날 일을 저지르고 있는 자신이 어떻게 정치인으로 나갈 수가 있겠는가 하고 말했다.

그러나, 그가 정치할 수 없는 더 큰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다. 괜히 팔자에도 없는 정치를 한답시고 잘못 나섰다가는 현재의 상태마저도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SNS나 인터넷 등으로 누구든지 자신의 이력을 들추어대기만 하면 무슨 수로 당해낼 수 있단 말인가? 행복한 가정, 존경받는 상사와 가장의 위치, 힘들지만 근근이 버티고 있는 사업 등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다는 것이 나에 대한 평가다. 젊은 시절에 철없이 저지른 각종 과오, 음주 운전의 기억, 양심의 소리에 어긋난 사건 수임과 진행, 전문가라면 믿겨지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 등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부끄러운 여러 가지 일에 정신이 아찔했다. 결국 누군가의 의혹을 제기하면 내가 해명해야 하고 책임질 일들이 아닌가? 그런 검증을 통과할 자신감은 나에게 0.001%도 없다. 모두들 동일한 심정일 것이다.

그러나, 전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정치적 관심과 열망을 갖춘 우리나라 국민 하나 하나가 막상 정치적 관문이나 청문회 자리에 자신을 뒤흔치게 내세울 수 없게 된 데에는 개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치부할 수 없는 점도 있다. 우리나라처럼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미풍양속인 양 만연해 있고, 매대춘이 술 취한 남성의 용기와 동료애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변질된 사회에서는 모든 국민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한편, 잠재된 양심불량자로 뒤쳐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정화하고 도덕성을 바로잡아야 하는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정치에서 나온다는 데 문제가 있다.

결국 흠 없는 정치인을 뽑아 깨끗한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검증시스템이 계속 작동되기를 바라면서 기다리는 것이 유일한 수(數)다. 나는 그저 검증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말이다.

bkyoon@yoolhyun.com

너도 정치할 수 있겠어?

만데!”

그 말을 듣자 좌중이 “와!” 하고 폭소를 터뜨렸다.

그는 자신이 결혼하기 전에 고의나 과실로 눈물 짓게 했던 수많은 여성편력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결혼한 뒤에는 출장과 조문을 핑계로 음주가무를 즐긴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했다. 수주를 위하여 관련 공무원과 부적절한 거래 등을 한 경험도 들려 주었다. 편법적인 회계처리와 절세라는 이름으로 저지르는 탈세도 사업 유지를 위해서는 어쩔

있다는 것이었다. 맞는 말이였다.

그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다. 만약 자녀들에게 비슷한 제안이 들어 온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갑자기 분위기가 숙연해졌다. 모두들 같은 반응을 보였다. “못해!” “자신 없어...” 흠이 너무 많아 정치를 할 수 없다는 그의 자백은 나에게도 고스란히 해당되는 것이었다.

사실 정치라는 것에 발을 들여 놓을 생각도 없고 생리적으로도 정치에 맞지 않는 나이지만, 애초부터 정치를 할 자격조차도 없

단상



김외숙 변호사

책을 읽다 나도 모르게 깔깔거렸다. 오스카 와일드가 쓴 ‘캔터빌의 유령’을 읽던 중이었다. 혼자 소리 내어 웃다 거실 저쪽에서 어이없다는 듯 쳐다보는 작은애랑 눈이 마주치자 그만 멈춰버렸다. “나중에 너도 읽어 봐, 진짜 웃겨.” 실없이 흘러나오는 웃음을 수습하느라 애쓰며 간신히 말했다.

녀석은 온갖 짜증과 성화, 엄포와 훈계로만 일관하는 엄마가 어찌된 일인가 했을 터이다. 사실 그랬다. 특별히 신경 쓰는 사건에서 받는 부담감, 사무실 직원에 대한 말 못할 불만, 채근하는 당사자, 죽어라고 말 안 듣는 큰아들, 스스로 사춘기라 선언하고 대놓고 까칠하게 구는 작은아들... 어디에서도 웃을 일이 없었다. 팍팍한 일상을 견디려면 주말 동안만이라도 복잡한 머릿속을 비우고 단순해져야 될 것 같았다. 오래 전에 주문해 서재 한 구석에 쌓아 두었던 책들을 뒤적이다 오스카 와일드를 만났다.

캔터빌의 유령은 1887년 ‘코트 앤드 소

사이어터 리뷰’라는 잡지에 발표됐다. 오스카 와일드는 이미 첫 희곡과 첫 시집을 낸 상태였고 소설 출판은 이것이 처음이었다고 한다.

이야기는 미국인 목사 오티스 가족이 영국인 캔터빌 경으로부터 그의 오래된 유령이 나오는 저택을 매수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매도인은 그 저택에 출몰하는 유령과 그가 일으킨 사건들에 대해서 매수인에게 충실히 고지하였고, 매수인은 감정가격에 가구와 유령까지 다 포함해서 받아들일겠다고 하였다. 유령에 대한 매도인과 매수인의 태도는 판이하게 다른데 오스카 와일드는

이를 통해 영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를 보여 주려 한 듯하다.

특히 재미난 것은 유령의 존재를 믿지 않는 미국인 가족이 유령을 대면하고 보여주는 반응이다. 유령이 손목과 발목에 목직 한 수갑과 녹슨 차꼬를 차고 쫓겨가려 하며 나타나 미국인 목사는 그 사슬에 기름 좀 칠 하라며 윤희유 병을 건넨다. 한 번만 발라도 아주 효과가 좋다는 미국제다. 거실의 핏자국은 나타나는 대로 목사의 장남이 역시 미국제 얼룩지우개와 세제로 재깍 지웠다. 영국인 공작 미망인은 거울에 비친 유령을 보

자 발작을 일으켰고, 교구 신부는 유령의 입김에 촛불이 꺼진 것만으로도 평생 신경성 질환을 앓아야 했는데 말이다. 300년간 영면에 들지 못하고 고택에 갇혀 짓궂은 장난이나 치며 하릴없이 떠돌던 불쌍한 유령에게 고약한 일이었다. 영화로 보는 듯 선명하게 그려지는 재미난 이야기 덕분에 한나절 나는 행복했다.

이렇게 독자에게 즐거움을 주면서도 정작 오스카 와일드의 생애가 행복하기만 했던 건 아니었다. 트리니티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에서 수학하던 시절, 유미주의의 전도사로 미국과 캐나다에 강연을 다니던 시절,

오스카 와일드와 Sodomy

글을 발표하고 성공을 거두던 시절처럼 그에게도 좋았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40대 초반이던 1895년, 점잖지 못한 행동을 한 죄로 2년의 중노동형에 처해지면서 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다.

그는 동성 애인 알프레드 더글라스의 아버지가 자신을 동성애자라고 떠벌렸으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화살이 도리어 그에게로 날아 왔던 것이다.

재판과정에서 그는 당대의 문사답게 상대방 변호사를 방청객들의 우스개로 만들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그의 사생활이



오스카 와일드



드러나면서 더글라스의 아버지는 청년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진실을 말한 공익의 대변자가 되고 그는 소도미(Sodomy)의 죄값을 치러야 했다. 투옥생활로 그는 명예, 건강, 돈, 애인, 처자식을 다 잃었고 출소 후 3년여 만에 외롭고 고단한 삶을 서둘러 마감했다.

지금도 선뜻 이해되지 않는 건 왜 명예훼손 고소로 이런 불행을 자초했을까 하는 점이다. 그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도 누린 고상한 취향을 몰라주는 영국사회의 고리타분함에 항변하고 싶었던 것일까. 아니면 결국 제 발등 찍은 예술가의 그렁고 그런 치기였을까.

아무리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미국사회라 해도 소도미를 처벌하는 주법들이 사라지게 된 건 연방대법원의 로렌스 판결이 나온 2004년에 가서였다.

분명 그는 너무 앞서 갔나 보다. 만일 그가 오래 살아 재미난 이야기를 더 많이 썼다면 어느 주말에 나는 캔터빌의 유령 2를 읽으며 다시 깔깔거리고 있었을지 모른다.

busandike@yahoo.co.kr

총북변호사의 특별한 이야기



이태화 변호사

어느 집이나 가면 글씨 하나 내지는 그림 하나쯤은 걸려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걸려 있는 글씨는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는 글귀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국 청나라 시대에 정판교라는 문인 겸 서화를 하시는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묵죽으로 유명하고 서도에 일가를 이룬 사람으로, 중국인들이 가정에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고 소장하고 싶어하는 글씨가 이 정판교라는 사람이 쓴 '난득호도(難得糊塗)'라는 글씨라고 합니다. 난득호도란 "어리석기가 참으로 어렵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리석기가 어렵다는 말의 뜻도 이해하기 참으로 어렵지만, 정판교가 썼다는 난득호도라는 글씨도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린아이가 처음 글씨를 배우며 열기설기 얹어놓은 듯한 글씨체에서 어렵פות이 어리석음을 표현하고 있구나라고 짐작하지만, 여전

히 그 뜻을 온전하게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문득 한국과 중국에서 각 가정에 가장 많이 걸려 있을 '가화만사성'과 '난득호도'가 표상하는 문화적 층위의 차이를 느낍니다. 한국과 중국의 역사의 무게와 국민의 의식 수준이, 가화만사성과 난득호도가 표상하는 만큼의 차이가 아니기를 내심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바쁘고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들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고 무언가를 얻기위해 그리 바쁘게 왔는지 되돌아 보는 시간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청주와 같은 중소도시에서는 개인이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가 일반이기 때문에, 더욱 무언가를 이루고 무엇인가가 되기 위하여, 누군가보다 앞서가기 위해 앞

그러나 언제나 좋은 결과로 이길 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평판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좋은 세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겼다는 것은 누군가를 패배케 한 것이며, 좋은 평판만을 얻으려 한다면 그 뒤에 있는 비방과 조소를 알기 어렵습니다.

이쯤에서 잔뜩 짙어진 짐을 내려놓고 쉬며 되돌아보고, 자신에 침잠하는 내성(內省)의 시간이 필요할 듯싶습니다. 난득호도라는 글귀가 떠오른 이유일 것입니다.

제 의견만이 옳다고 우겨대던 시간, 내가 없으면 아무 것도 될 수 없다는 자만, 함께 길을 가는 동료들에 대한 경쟁심리와 질시, 이



정판교(1693~1765)의 난득호도

알아야 마음가짐을 추스르고 앞길이 보일 듯 싶습니다. 독서보다 사색이 중요함을 실감하고, 고요하게 앉아 있는 여유로움이 더 가치있고 삶을 깊이 있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일정좌(半日靜坐), 반일독서(半日讀書)'라는 옛사람의 경지가 부러워집니다. 정좌의 시간을 늘려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정좌하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없이 허둥지둥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잃어버린 정신의 어떤 경지를 되찾아야, 온전한 내가 될 듯 싶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기고 지는 것도 없으며, 악착스럽게 죄와 벌을 따지는 것도 인간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길이었을 뿐임을 깨닫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별것 아닌 제 것만이 최고인 줄 알고, 남이 잘한 것은 보지 못하고 제 잘못에는 눈을 감는 어리석음도 벗어나고, 변덕이 심한 세상 인심에 마음의 상처입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는 마음상태를 알아가면서 '난득호도'의 뜻을 얻기 위해 오늘부터 반일정좌를 실천해 보아야 하겠습니까.

thlee8008@daum.net

난득호도(難得糊塗)

만 보고 달려가게 되는 경향이 더 큰 것도 같습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남보다 앞서기 위한 경쟁으로 주위를 돌아볼 여유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로 사회에 발을 디딘 후에도, 변호사로서나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남보다 드러나기 위해 정신없이 달려온 날들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위임된 사건은 어떻게든 좋은 결과를 얻어야 하고, 주위의 평판에도 깊은 배려를 해야 했습니다.

런 모든 것들에 얽매어 자아를 잃고 미로를 헤매는 모습이 허허롭기만 합니다. 결국 남은 것은 귀머리 성성하고 완고한 노인의 얼굴뿐입니다.

그 얼굴에 남아있는 간난과 영욕의 흔적들이, 세상살이가 쉽지 않았음을 일깨워 줍니다. 이제는 적막 속에서 자신과 대면하며, 사람에게서는 무언가를 위해 지칠 줄 모르고 달려가는 간난의 세월뿐 아니라, 성찰의 시간도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고요한 적막 속에서 자신을 되돌아볼 줄

클래식과 친구하기



하죽봉 변호사

수많은 곡 중에서 어떤 곡을 먼저 듣는 것이 좋은지 물으시는 분들에게 '노래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라고 답합니다. 노래, 즉 가곡 또는 예술가곡은 오페라 등의 아리아나 유명한 곡에 가사를 붙인 것과 달리 독자의 영역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등 귀에 익은 작곡가들이 몇십곡 이상의 가곡을 남겼으며, 가곡 전문 가수도 있습니다.

보리수나 들장미로 익숙한 슈베르트부터 보겠습니다. 가곡의 왕이라고 불리는 만큼 그는 연작곡집인 겨울 나그네, 아름다운 물레방앗간의 아가씨, 백조의 노래 외에도 많은 곡을 썼습니다. 연작 또는 전작이라고 해서 모두 명작이거나 훌륭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골라 들으면 됩니다. 그 외에도 바위 위의 목동이라는 곡은 꽤 길기도 하고 클라리넷이 반주악기의 하나로 들어 있는 독특한 곡입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곡이

아베마리아입니다. 이 곡의 가치는 가톨릭 신자가 아니더라도 듣는 이에게 말할 수 없는 평온과 위안을 주는 데 있습니다.

또 구노의 아베마리아도 유명하지요. 구노는 파리의방선교회 소속 신부가 조선에서 순교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감격하여 이 곡을 지었다고 하므로 우리에게 더 친근해질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곡은 특이하게도 창작이 아니라 일종의 편곡입니다. 바하의 평균률 피아노곡집 제1권 제1곡 제1번의 전주곡을 기본으로 만든 것으로 피아노 연습곡을 이런 명곡으로 변신시킨 데는 음악적 요소 외에 경건한 신앙심이 있었다고 하는 사람

도 있습니다. 아베마리아 중에서 베르디의 오텔로에서 데스테모나가 간구하는 장면에서 부르는 아리아도 유명하며, 요즘 유행하는 카치니의 것은 라틴어 가사를 무시하고 아베마리아만 계속하여 부릅니다.

세대를 올라가서 모차르트의 제비꽃, 클로에, 봄에의 그리움도 좋으며 슈베르트의 가곡과 비교하여 고전파와 낭만파로 대표되는 두 사람의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엄숙하게만 느껴지는 베토벤도 아멜라이데, 그대를 사랑해 등 사랑스런 가곡을 남기고 있습니다. 슈만은 시를 가사로 한 여인의 사랑과 생애, 시인의 사랑이란 두 개의 가곡집

을 남기고 있는데, 가곡에 맛을 들이면 꼭 듣고 가야 한다고 합니다.

브람스는 편곡의 수준을 넘어 독일 민요를 100곡 넘게 작곡하여 독일인들이 슈베르트 못지않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의 4개의 엄숙한 노래는 독일어 성경 구절을 가사로 한 것으로 제목 그대로 경건한 느낌을 줍니다. 독일어로 된 성경 구절을 대본으로 한 그의 레퀴엠을 떠올리게 합니다. 같은 독일계의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도 말년에 마지막 노래라는 제목으로 4곡을 썼는데 장대한 오케스트라의 반주에 따른 가사의 의미가 심금의 울림을 배가시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곡입니다.

생전에 브람스와 애호가들을 양분한 바그너도 가곡에 얽힌 얘기가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만든 대본으로 몇시간씩 걸리는 오페라를 쓴 것으로 유명하지만 베젠동크의 시에 의한 5개의 가곡은 아마추어의 시를 가사로 삼았습니다. 바그너가 드레스덴에서의 반정 시위에 연루되어 추리히로 망명했을 때 음악애호가인 부유한 상인 베젠동크가 제공한 별저에서 사랑과 죽음이 모티브인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작곡하던 중 그의 부인 마틸데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남편이 현명하게 수습하여 더 이상 진전 없이 끝

났지만 바그너는 마틸데가 써준 시를 바탕으로 가곡을 지어 음악사에 베젠동크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볼프와 말러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볼프는 가곡 일변도로 수백곡을 남기고 수만처럼 정신병으로 고생하다 마흔을 얼마 안 넘겨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가곡에 들인 열정과 불행한 생으로 인하여 그의 가곡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독창회의 레퍼트와로도 자주 오릅니다. 말러의 가곡은 금세기 들어 교향곡 못지않게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의 염세적이고 세기말적인 분위기는 가곡이라고 해서 빠지지 않습니다. 죽은 아이를 그리는 노래는 제목만 들어도 울컥해집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잊혀지고'라는 제목의 가곡은 대지휘자 마젤이 은퇴의 변에서 인용한 것이 신문에서 알려진 후 새삼 가사를 찾아 본 분도 많았으리라 믿습니다. 이 모두 뤼케르트의 시를 대본으로 하는 데 관현악의 반주가 있어서 독특한 맛을 느끼게 합니다.

위에서 든 작곡가 중 언급 안한 곡도 많습니다. 그 외에도 금발의 제니, 스와니강 등 민요풍의 노래를 많이 쓴 포스터는 너무 친숙해서 빠뜨리기 쉽습니다. 아일랜드의 대니보이, 프랑스의 강탈루브의 노래, 이탈리아의 산타 루치아, 돌아오라 소렌토로, 푸니쿠니 푸니쿨라도 훌륭한 가곡입니다. 가곡을 거치면 같은 사람의 목소리를 기본으로 하는 중창이나 합창곡에서 나아가 오라토리오, 오페라에도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jbha777@yahoo.co.kr

아베마리아 등 가곡부터

주요판결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2. 6. 18. 전원합의체 선고
2011두2361 상고기각

甲은 乙 등을 고소하였지만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甲은 乙 등에 대한 각 피의사건기록의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진술조사, 기록목록, 사건송치서 중 개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부분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하지만 지방검찰청검사장은 기록목록, 사건송치서 부분을 공개하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러한 비공개결정은 정당한가?

불기소처분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 내용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규정하였으나, 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부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위 비

인적사항 외 피의자신문조서·참고인조서 진술내용 사생활 비밀·자유 침해 우려있으면 비공개 대상

공개대상정보를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개정하였다.

이러한 정보공개법의 개정 연혁, 내용 및 취지 등에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내용을 보태어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구 정보공개법상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 따라서 불기소처분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입증책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는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

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한다는 것은 처분청인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사안의 경우

대법원은 "피고가 비공개결정한 정보 중 관련자들의 이름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주거 또는 직장주소), 본적, 전과 및 검찰 처분, 상훈·연금, 병역, 교육, 경력, 가족, 재산 및 월수입, 종교, 정당·사회단체가입, 건강상태, 연락처, 전화 등의 개인에 관한 정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위 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개인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표현이 다소 적절치 않으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며, "원심이 공개를 결정한 이 사건 정보들이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들이 위 규정에 따라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배척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

대법원 2012. 6. 18. 전원합의체 선고
2010두27363 파기환송

甲은 군대에 입대하였으나 업무처리 미숙으로 선임병들로부터 질책과 따돌림을 당하고 후임병들과도 어울리지 못했다. 甲은 어느 날 군에서 실시하는 평가시험에서 대리시험을 보다가 들켜 문책받은 후 목을 매 자살하였다. 甲의 아버지 乙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보훈청장은 甲의 사망이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이러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은 정당한가?

군인의 사망이 자해행위인 자살로 인한 경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제1조),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하는 것을 예우의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음(제2조)에 비추어 보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이라 함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는 군인의 사망이 자해행위인 자살로 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군인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자유로운 의지에

인이 된 경우(제3호)를 국가유공자 제외사유로 들고 있어, 이는 모두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예시한 규정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제4호가 들고 있는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역시 위 각 호와 마찬가지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자해행위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를 주의적·확인적으로 규정한 당연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가)목 소정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

자살한 군인...사망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 있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어

따른 것이거나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삶을 포기할 정도에 이른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닌 경우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제4호는 국가유공자 제외사유의 하나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를 들고 있으나, 위 조항은 또한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제1호),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제2호),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가 원

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그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기존 대법원 판례의 변경

군인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면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제4호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거나 또는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삶을 포기할 정도에 이른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닌 한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2205 판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6702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4789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13533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두14578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안에서 모두 변경한다.

사안의 경우

대법원은 "망인이 군 복무와 관련된 정신적 스트레스와 대리시험 적발로 인한 부담감으로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삶을 포기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망인의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은 국가유공자 제외사유인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망인의 자살이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하고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그로써 곧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법리를 전제로 그에 관하여만 판단하고, 망인의 직무수행과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심리·판단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하여 '파기환송'하였다.

※ 국가유공자법의 개정(2011. 9. 15. 일부 개정)으로 국가유공자 제외사유로 규정되어 있던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는 삭제(2012. 7. 1. 시행)되었다.

/ 정리 신진우 대한변협 사무차장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은 제4조 제1항 제5호(가)목에서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와 그 유족 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제6항에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고 하면서 그 제4호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를 들고 있다.
구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

대한변협-중국올협 정례교류회를 다녀와서



최진녕 변호사
대한변협 대변인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중화전국올협사협회 사이의 제17차 정례교류회가 있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신영무 협회장님을 비롯하여 모두 31명의 대표단이 베이징을 방문했고, 첫날부터 주중 한국대사관에서의 리셉션을 시작으로 중화전국올협사협회와의 세미나, 베이징을사회 방문, 최고인민법원 부원장(대법관)과의 간담회 그리고 사법부(법무부) 차관과의 대담 등 바쁜 일정을 성공적으로 소화했다. 특히 이번 교류회에는 김삼화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님을 비롯한 4명의 여성변호사회 대표단이 처음으로 동행해 중국 여성법조인들과 교류회를 가졌고, 법조계에서 여성 법조인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중국에까지 알릴 수 있었다.

6월 9일자 CHINA DAILY

9일 이른 아침. 베이징의 차이나월드호텔에서 아침식사를 하던 중 '차이나 데일리' 경제면에서 "최근 들어 중국기업의 해외투자금액 규모가 급증하고 있고, 2020년 중국의 대외 직접투자금액이 2조달러가 될 것"이라는 기사를 보았다.

2조달러라면 원화기준 약 2400조원이다. 작년도 영국 GDP가 2조4809억달러(세계 7위), 한국의 GDP가 1조1638억달러(세계 15위)였던 점을 생각하면 실로 엄청난 규모이다. 2006년도 한국 부동산 추가격이 2400조원이었으니, 중국 기업들이 마음만 먹으면 한국의 부동산을 한 해 동안에 몽땅 사버릴 수도 있다는 말이다.

국제화 시대의 변호사 역할과 양국 법조인 교류 협력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중국 정부와 중국 변호사들의 핵심 관심은 자국의 해외 진출 기업들이 외국에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법률적인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지, 그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변호사나 로펌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번에 이루어진 제17차 정례교류회 일정 중 중국 측이 주도한 행사는 대부분 이러한 주제를 중심에 두고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중국 정부와 중국 변호사들이 지난 10여년 동안 한국 변호사에게 축적한 국제화 경험의 정수를 배우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러한 중국 측의 의도에 부응해 대한변협은 IMF사태 이후 한국의 국제화 과정에서 한국 법조인들이 체득한 국제 업무의 노하우와 비결을 성의껏 전달해 주었고, 그와 동시에 대한변협의 활동 소개와 내년 4월 열리는 IPBA 서울총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중국 변호사들의 활발한 동참을

권유했다.

한·중 법조인 교류 리셉션

베이징 도착 당일인 6일 저녁 7시, 주중 한국 대사관저에서 한·중 법조인 교류 리셉션이 있었다. 신영무 협회장은 그 자리에서 제17회 한중 법조인 교류회의 시작을 선언함과 동시에 예상보다 훨씬 많은 중국 변호사들이 리셉션을 찾아준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전했고, 내년 IPBA 서울총회에 많은 중국 변호사들이 참석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이어서 중국 IPBA를 대표해 첸쯔러우 여성 변호사가 IPBA 서울총회에 관한 영어연설을 했고, 변협도 미리 준비해 간 IPBA 총회 준비상황을 담은 동영상 상영했다.

리셉션장을 가득 채운 양국의 법조인들은 IPBA 서울총회에 관한 큰 관심을 나타냈고, 이를 통하여 서울 총회의 성공을 확신할 수 있었다. 성황리에 이루어진 리셉션 행사의 성공에 흡족해 하던 이규형 대사님의 흐뭇한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대한변협-중국올협 주제 발표 세미나

7일 양국 단체는 중국올협 회의실에서



7일 중화전국올협사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기업의 해외진출에 있어서 변호사의 법률지원 등 역할' 세미나

프레젠테이션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의 변호사 역할과 그 노하우에 목말라 있던 중국 법조계에 단비와 같은 존재가 된 것이다. 변협 측의 주제 발표는 이번 교류회의 성과 중 IPBA 총회 홍보 못지않게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한다.

중국 최고인민법원 및 사법부 방문 등

8일 오전, 변협 대표단은 중국의 대법원인 중국최고인민법원을 공식 방문했다. 이 자리에 지양비신 최고인민법원 부원장(대법관)이 변협 대표단을 맞이했다. 지양 대법관

M&A, 금융 부문 등 국제적인 업무에서 영미계 로펌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됐다. 아이러니하게 정부의 지원 정책이 아니라, 정책 실패로 인하여 재야 법조계의 발전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그와 함께 신 협회장은 종래 국제조선분쟁 사건에서 중국 변호사들과의 공동 작업 경험을 예로 들면서, "중국 변호사들의 역량이 대단하다. 특히 영어 등 언어 부분은 한국 변호사보다 뛰어나다. 중국 사법부가 국제 거래에서 중국 변호사의 참여를 독려한다면, 5년 내로 중국 변호사들의 실력은 국제적인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자오 차관도 협회장님의 설명으로 한국 법조계의 국제화 과정을 잘 이해하게 되었다면서 대한변협의 발전과 2013년 IPBA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미리 축복한다는 말로 대담을 정리했고, 기념품 교환식을 끝으로 모든 공식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사법부 방문을 마치고 나오면서, 여성변호사회 회원들이 입을 모아 "자오 차관이 멋지고 잘 생겼다. 하지만 자리에 앉아서 꼼짝도 않고, 별로 웃지도 않는 것을 보니까 판사와 달리 차갑고 딱딱해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한 말들이 기억에 남는다.

마치며

1996년부터 시작된 양 변호사단체 간의 교류회는 올해로 벌써 17회를 맞이하게 됐다. 사람에 비유하자면 열일곱살 난 꽃다운 청춘의 아름다운 자태를 갖추게 된 셈이다. 그만큼 금번 모임은 어느 교류회보다 아름답고 활동적이었으며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한다. 우리 인생에서 고교 시절 때 맺어진 인연은 평생을 간다. 이번 방문기간 동안 각종 행사를 통하여 다진 양국 법조기관 사이의 우정도 것처럼 오래도록 지속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마지막으로 대한변협을 대신하여 한·중 법조인교류 리셉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규형 대사님과 대사관 관계자, 시의 적절한 주제의 세미나 준비를 비롯하여 최고인민법원, 사법부 등의 기관 방문을 마련해 주시고 중국의 8대 진미를 두루 맛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왕진평 중국올협사협회 회장님과 장취에빙 부회장님 등 협회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choijinnyoung@gmail.com

한국 국제화 경험 배우려는 모습 열정적

내년 IPBA 서울총회 홍보·동참 권유

정부지원없이 발전 이룬 한국상황 소개

'기업의 해외진출에 있어서 변호사의 법률지원 등 역할'에 대한 주제로 심도 깊은 세미나를 개최했다. 먼저 중국올협의 첸쯔러우 변호사(외사위원회 위원)가 '중국 변호사는 어떻게 중국기업의 국제화를 위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가'를 주제로 한국기업의 중국 내 투자의 특징, 중국 정부의 외국인 투자에 관한 중요 규정인 '외자이용 사업을 진일보 개선하는 국무원 약간의 의견'에 대한 개략적 내용, 중국기업의 한국 진출시 누릴 수 있는 2가지 장점 등에 관한 발표를 했다. 덧붙여 지난해 12월경에 있었던 중국 최대 로펌인 킵앤드우드와 호주 로펌인 팰러슨스티븐즈 사이의 M&A를 소개하면서, 대한변협의 의견을 묻기도 했다.

이어 대한변협 강희철 부협회장은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에 있어서의 한국 변호사(로펌)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파워포인트 자료를 시연하면서 거래 관련 정보제공, 국내외 인허가 문제, 기업결합신고문제, 조세문제, 대상국의 법률문제 등 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된 한국 변호사의 일반적인 역할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나아가 다년간에 걸친 국제 업무 경험에 근거해 각 쟁점으로 심도 깊은 노하우를 설명해 주었다.

강 부협회장의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중국 변호사들의 열렬한 박수가 이어졌고, 수많은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의 자료와

은 한 시간가량 중국 사법제도의 특징을 한국의 법제도와 비교하면서 설명했고, 더불어 중국최고인민법원의 체제와 운영상황에 대하여도 간략하게 소개했다.

이어진 차철순 부협회장 등 여러명의 날카로운 질문에도 지양 대법관은 차분한 어조로 성의 있는 답변을 해준과 아울러 "한국과 중국 양국 법률가들이 많이 교류해서, 서로 아시아 인민에게 많은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는 덕담을 해주었다. 그의 겸손하고 선비와 같은 풍모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당일 오후, 대한변협 대표단은 한국의 법무부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사법부를 방문했고, 자오 파칭 중국 사법부 차관이 대표단을 반갑게 맞아 주었다.

이 모임은 자오 차관과 신영무 협회장의 대담으로 이어졌다. 두 대표가 서로 환영의 덕담을 나누는 다음, 자오 차관은 신 협회장에게 "기업의 국제화와 변호사의 역할에 관하여 한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다"면서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하여 신 협회장은 "한국 정부는 국제화 쪽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않았다. 대신 변호사에게 자율적으로 이를 행하게 하고 있다. IMF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대형로펌들은 기업의 국제화에 큰 기여를 했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기업

새 법률을 소개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 6. 19 일부개정 / 2012. 6. 22. 시행

-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최초로 신고한 자의 신고일로부터 2년이 지나 신고한 자 및 2개 사업자가 가담한 부당한 공동행위인 경우의 두번째 신고자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하도록 하였다.

- 기업결합 신고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업결합 사전신고 위반행위의 과태료 금액을 현행 75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에서 1500만원부터 4000만원까지로 2배 상향 조정하고, 사후신고 위반행위의 과태료 금액을 현행 100만원부터 300만원까지에서 400만원부터 1200만원까지로 4배 상향조정하였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2012. 6. 5. 일부개정 / 2012. 6. 5. 시행

-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이 연구개발한 지식재산권이나 소유를 조건으로 참여기관이 부담하여 취득한 시설 등도 주관연구기관이 소유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참여기관이 소유를 조건으로 부담하거나 그 밖에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 부적합한 연구장비 등 유형적 성과와 참여기

관이 연구개발한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성과는 각각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2012. 6. 7. 일부개정 / 2012. 6. 7. 시행

- 신청 목적에 비하여 과도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채권·채무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교부하는 경우 과거의 주소변동사항과 병역사항을 생략하여 열람·교부하도록 하였다.

- 가정폭력피해자가 본인 또는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또는 등·초본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열람 또는 교부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에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추가하였다.

-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채권·채무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자료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 금융회사 등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자료의 경우 다수의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하는 금융회사 등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반송된 내용증명 대신 채무자 등의 현재 주소지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반송된 우편물 등을 증명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임금채권보장법

2012. 2. 1. 일부개정 / 2012. 8. 2. 시행

- 사업주의 자발적인 임금 체불 청산을 지원·유도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고, 위 융자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였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2. 2. 1. 일부개정 / 2012. 8. 2. 시행

- 현행 차별시정 제도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신청과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통해 사후적으로 차별이 해소되는 구조이며 당사자가 불이익을 우려하여 차별시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

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노동위원회가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심리하여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사전적·적극적으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였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2012. 1. 17. 일부개정 / 2012. 7. 18. 시행

- 채무확인서 발급 상한액이 규정되지 아니하여 채권추심업체가 민사집행비용 등까지 포함한 과도한 발급비용을 요구하여 채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이를 둘러싼 분쟁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채권추심자는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하였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 6. 12. 일부개정 / 2012. 7. 18. 시행

- 채권추심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대한변협 신진우 사무차장

유기죄에서 법률상 보호의무

대법원 1977. 1. 11. 선고 76도3419 판결



※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판례 정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적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판결요지

현행 형법은 유기죄에 있어서 구법과는 달리 보호법익의 범위를 넓은 반면에 보호책임없는 자의 유기죄는 없애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 있는 자만을 유기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사회상규상의 보호책임을 관념할 수 없다고 하겠으나 유기죄의 죄책을 인정하려면 보호책임이 있게 된 경우 사정관계 등을 설치하여 구성요건이 요구하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보호의무를 밝혀야 하고 설혹 동행자가 구조를 요하게 되었다 하여도 일정거리를 동행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법률상 계약상의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해설

이 판결은 유기죄의 주체가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회상규 혹은 조리에 의한 구호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이라고 하는 취지이다. 이는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 법'과 같은 긴급구호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죽어도 할 수 없다는 의사가 있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된다. 그런데 통설, 판례는 사회상규 또는 조리에 의한 작위의무를 인정하므로, 만약 검사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하였다면 그 결과가 궁극적이다.

총평

2미터 개울 아래로 떨어졌는데도 계속 잠을 잘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

글 : 오영근 한양대 로스쿨 원장 / 그림 : 이영욱 변호사

출처 : 만화 형법 판례 "형법각론" 【법률저널】



양삼승 변호사의 法街散策

미국 형사사법의 실태

얼마 전 대한변협에서 발간하는 잡지에 ‘최고의 변론(원제는 The Best Defense)’이라는 책을 간단히 소개한 적이 있었다. 이는 하버드 대학의 형사법 교수인 앨런 M. 더쇼비츠가 쓴 것으로서, 미국의 형사사법에 관하여 그가 직접 경험한 바를 토대로 비판적인 시각에서 진솔하게 적은 것이다. 위 책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형사사법 게임의 주요법칙(The Rules of the Justice Game)’이라고 요약하여, 13가지 법칙으로 정리하고 있다. 지난 번에는 그 중 일부만 인용하였으나, 그 내용이 정곡을 찌른 것이어서 전부를 옮겨 적어본다.

“여러 형사사건의 소송을 직접 수행하면서, 그리고 이 책을 집필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나는 오늘날 미국에 있어서 -사실상으로- 형사사법절차를 지배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법칙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 형사사법절차에 관여하는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이러한 법칙들을 잘 알고 있다. 다만 이러한 법칙들은 결코 인쇄되어 글자로 표현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형사사법절차의 현실을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른 모든 법칙들과 마찬가지로, 이 법칙들 역시 필연적으로 지나

치게 간소화된 용어로 서술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 법칙들은 형사사법절차가 실제로 있어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에 관한 중요한 요소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 법칙 1. 형사재판의 거의 모든 피고인들은 사실에 있어서 유죄이다(범죄를 저질렀다).
- 법칙 2. 모든 형사변호인, 검사 및 판사들

은 위 법칙 1을 잘 알고 있고, 또한 이를 믿고 있다.

법칙 3. 헌법을 따르는 것보다는, 헌법을 위반함으로써 실제 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이 훨씬 쉽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헌법을 위반하지 않고서는 실제 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다.

법칙 4. 실제 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받게 하기 위하여 헌법을 위반한 적이 있느냐고 경찰관에게 물으면, 거의 모

- 든 경찰관들은 거짓말을 한다.
- 법칙 5. 모든 검사, 판사 그리고 형사 변호사들은 위 법칙 4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
- 법칙 6. 실제 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이 유죄판결을 받게 하기 위하여, 경찰관들이 헌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도록 많은 검사들은 암묵적으로 경찰관들을 부추긴다.
- 법칙 7. 모든 판사들은 위 법칙 6을 잘 알고 있다.
- 법칙 8. 대부분의 1심 판사는 경찰관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신뢰하는 체한다.
- 법칙 9. 모든 항소심 판사들은 위 법칙 8

‘형사사법 게임’의 법칙 13가지

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많은 항소심 판사들은 거짓말하는 경찰관을 믿는 체하는 1심 판사들을 믿는 체한다.

법칙 10. 대부분의 판사들은, 피고인들이 헌법에 규정된 그들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여도 이를 믿어주지 않는다. 심지어는 피고인들이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법칙 11. 대부분의 판사와 검사들은 그들이 기소된 범죄에 관하여 무고하다고 믿는 피고인에 대해서까지 알면서 의도적으로 유



- 죄의 판결을 내리지는 않는다.
- 법칙 12. 위 법칙 11은 조직범죄, 마약범죄, 상습범죄 및 잠재적 정보제공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 법칙 13. 아무도 진심으로 정의를 원하지 않는다.

평소 사법선진국으로 인식되고 있는 미국에서까지도 현실이 이와 같다는 지적을 접하고 보니, 한편으로 놀라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 사는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구나 하는 엉뚱한 안도감(?)이 들기도 한다. 이제 우리의 머리에 남는 숙제는 다음의 2가지이다.

하나는 과연 우리의 형사사법 현실은 어떠한가, 그리고 나아가 사법전반 특히 민사사법 분야와 법조를 구성하는 법관 검사 변호사 전체에 대한 철저하고 진솔한 분석의 필요성은 없는가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 필요성이 있다면, 과연 누가 용기를 가지고 이와 같은 작업을 해낼 수 있을까이다.

통찰력과 사명감을 갖춘 훌륭한 법조인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ssyang@hwawoo.com

로스쿨 통신



이창민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올해 법학적성시험 지원자 역대 최저”
“로스쿨 이대로 좌초하나?”

이러한 기사를 보고 무척이나 놀라고 의아했던 기억이 난다. 2년 전 이맘때쯤 같은 기사를 보았으면 무척이나 경쟁자가 줄어들었다는 생각에 기뻐했을지도 모르겠다. 지금 생각에는 2년이나 늦은 이러한 소식이 다소 아쉽게도 느껴지기도 했지만.

법조인의 관문으로서 로스쿨은 많은 논란 속에 있다. 3년간의 시간과 기회비용, 엄청난 학비를 투자하면서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이들도 있고, 그 합격자비율은 해가 갈수록 점점 낮아질 예정일 뿐 아니라, 사법시험을 존치하자는 의견은 끊이지 않고, 게다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도 실력에 대해 끊임없는 물음표가 주어지는 상황인 것이다.

아마 올해의 지원자 감소현상은 그러한 사실에 기반하고 있지 않나 싶다. 이번에

법학적성시험을 치르는 5기 입학생의 경우,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에 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3년 동안 평균 6000만원에 달하는 학비를 부담하면서, 변호사시험의 합격이 어느 정도 보장되지 않는다면 아마 쉽게 도전장을 내밀 수 없지 않았을까. 더군다나 사법시험이 2017년도까지 존치된다면, 신입동학원가에서 강의를 듣고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더욱 경쟁력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을 법도 하다.

물론 제도적인 부분에서의 아쉬움은 있다. 로스쿨의 정원조정 등을 통하여 입학

어렵게하고 정상적으로 로스쿨 과정을 마치면 변호사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다면, 이른바 사시낭인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양질의 변호사를 다수 배출하여 무변촌을 없애겠다는 로스쿨의 취지를 충족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제도는 언제든 변하기 마련이고, 사법시험제도 또는 로스쿨제도 중 어느 제도가 본질적으로 옳고 그르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일이다. 또한, 지금까지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면 원하는 일보다 원하지 않는 일을 경험하는 일이 더욱 많지 않은가?

로스쿨을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물론 많은 고민과 아픔들이 있다. 학점은 잘 받을 수 있을지, 변호사시험은 합격할 수 있을지, 합격하더라도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할 수는 있을지, 로스쿨을 나왔다고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등 수많은 고민을 하고, 로스쿨 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도된 기사 등을 보면 침울해지기도 한다. 사법연수생들과의 비교도 물론 그렇다.

하지만 시련은 어느 날 문득 찾아온 것은 아니다. 출범 초기부터 예정되어 있던 것이 아니었던가? 처음 변호사시험 모의고사는

불광불급(不狂不及)

수능과 비교당하며 기성 법조인들의 조롱을 샀고, 사법연수원생들은 함께 경쟁을 해야 하는 로스쿨생들을 못마땅해하고, 법률시장에서도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로스쿨 졸업 변호사들의 채용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존재했다. 75%의 합격률을 보장하면, 어떻게 그 능력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겠느냐는 의미에서였다.

그럼에도 많은 1기 선배들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로스쿨에 입학해 3년이 지나 변호사가 되었다. 나이가 40을 넘고 법학에 대한 경험이 없어도, 법률전문가로서의 꿈이 너무도 컸기에 제도의 불확실성과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고, 꿈을 꾸지 않으면 이를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미친 사람들이 많은 로스쿨의 미래는 여전히 밝다.

엄청난 기회비용을 감수하고 로스쿨을 택했던 것이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졸업하여 변호사가 된 그들은 이제 자리를 찾아 조금씩 자기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법학적성시험 지원자 감소가 로스쿨의 위기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간절함이 없이도 잘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가를 생각해보자. 아마 올해의 지원자 대부분은 법률가에 대한 절박하고 간절한 꿈을 안고 지원한 사람들일 것이고, 그들은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스스로의 실력을 쌓아가며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것을 극복해내지 못할 사람이라면 당연히 로스쿨에 진학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고, 꿈을 꾸지 않으면 이를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학교에는 미친사람들이 많아서 좋다. 미친 사람들이 많은 로스쿨의 미래는 여전히 밝다.

cptleecm@gmail.com

MY (성공) PARTNER

대한변호사협회 취업정보센터
<http://career.koreanbar.or.kr>



1. 기존 변호사들은 물론, 사법연수생·로스쿨 재학생들도 인증 절차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변호사 취업정보 사이트입니다.
2. 일반 채용정보뿐 아니라 변호사 개업·인턴십 정보 등, 변호사·예비변호사들이 필요로 하는 진로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조건검색과 구직자와 채용자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구직자는 원하는 일자리를, 채용자는 원하는 인재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4. '커뮤니티' 내 변호사전용 익명게시판을 통해 새내기 변호사와 선배 변호사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한 경험 및 노하우 등을 나눌 수 있습니다.
5. 취업가이드, 자료실 등을 통하여 각종 서식, 기재례, 업무매뉴얼 등 변호사 업무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